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수탁보고 2020-09

발 간 등 록 번 호
58-9300000-000179-01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0-09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연구책임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 정 은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0-09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발 행 일 2020년 02월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한누리대로 2154
전 화 044) 320-1000
팩 스 044) 320-3198
홈페이지 http://www.sje.go.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58-9300000-000179-01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귀하

본 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0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10
3. 연구 방법 11

Ⅱ. 법적 배경과 해외 사례 13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13
2. 해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규정 사례 17

Ⅲ.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25
1.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및 확충 현황 25
2.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사례 32

Ⅳ.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안 47
1. 유치원 특성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47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의 지원 체계 51

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충을 위한 제언 53
1. 현황 분석의 주요 결과 53
2. 개선 필요 사항 54
3. 확충을 위한 제언 56
4. 기타 제안 59

참고문헌 60

부록 61

부록 1.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의견조사 질문지 63
부록 2.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65

요약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에 대한 학부모 요구에 따라 정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의 통학편의를 돕고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확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여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통학버스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를 돕고 어린이통학버스 확대 지원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둠.

나. 연구 내용

□ 유치원 통학버스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유치원 “유아수 규모별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 모델” 개발

□ 통학버스 업무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관련 지원 방안 제안

다. 연구 방법

□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심층 면담 실시

□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담당자 의견 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 연구 배경

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52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 시 주변 차량들이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표시가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법 제53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유아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하며, 동승보호자와 함께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나. 해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규정 사례

1) 미국

□ '통학버스 보호법'에 의해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어떤 방향에서든 다른 차량이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은 불법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승하차하는 학생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함.

□ 버스 좌석 배치를 특별하게 함으로써 승객에게 충돌 방지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적용하여 별도의 안전벨트가 불필요함.

□ 소형 통학버스(차량 중량 약 4.5톤 이하)는 모든 좌석에 2점 또는 3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장착해야 함.

□ 학생이 직접 버스를 마주치게 되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부모에게 가이드를 전달함으로써 자녀의 버스정류장 안전 지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2) 영국

□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하교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8세 미만 아동은 최단 거리 2마일(약 3.2킬로미터), 8세 이상은 최단거리 3마일(4.8킬로미터) 내에 거주할 경우

등하교는 도보로 하도록 함.

□ 2001년 10월 1일 이후 모든 대형버스, 미니버스, 일반버스(시내버스 제외)는 안전벨트를 갖추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무릎 벨트(lap belt: 2점식) 구비를 최소한 요건으로 함.

□ 미니버스의 운전자는 3세부터 13세까지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14세 이상은 승차자 본인에게 벨트착용의 책임이 있음.

3) 일본

□ 일본의 통학버스는 인구밀도가 낮거나 학교가 적고 겨울철에 도보나 자전거 통학이 어려운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되며 결과적으로 홋카이도 지역에 많음.

□ 유아전용일 경우 탈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전벨트는 면제됨.

□ 문이 열려 있으면 액셀레이트를 밟아도 발차할 수 없는 구조임.

□ 문을 닫을 때는 예고부저가 울린 후 몇 초 뒤 문이 닫힘.

□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램프와 경고부저로 운전기사에게 알림.

3. 통학버스 운영 사례 및 요구 분석

가. 통학버스 운영 사례

□ 경기도의 단설유치원의 경우 현 92개원 중 49곳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은 특수한 3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병설유치원은 모두 미운영 중임.

- 병설유치원의 경우, 안전성과 편리성을 따라 1.5km 내를 통학거리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반경 내 통학버스의 주정차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교문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도보 거리도 고려 대상이 됨.

□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운영이 원활한 단설보다는 정원 충원율이 낮은 병설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대상으로 계획함. 병설의 경우 80%이하 충원율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신청률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은 유치원통학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으나, 이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유치원은 버스 안전사고 위험 등의 책임감 때문에 적극적 수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 강원도에서는 '에듀버스'라는 명칭으로 일부 유·초등 통학버스 운영을 교육청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권역을 묶고 하나의 차량이 한 개 이상 학교를 운행하도록 함.

나. 개선 요구

□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과 운영 확충을 위한 자체적 노력 및 장애물, 그리고 운영 매뉴얼 제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함.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 장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승하차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책임관 또는 교사의 확인 의무 등과 같이 안전한 승하차 관리가 필요함.

□ 매년 통학차량 임차 계약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차차량 계약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안

□ 국·공립 유치원은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규모 차이가 크게 나며 특히 공립초등병설과 단설 유치원 간에도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음.

□ 통학버스 이용 유아의 수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통학버스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됨.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수요를 가진 잠정적 유아 수에 따라 유치원 규모를 구분하고 각각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함.

□ 차량 이용 수요를 가진 유아가 4명 내지 13명 정도일 때 9인승 승용차 혹은 11인승 승합차를 통학차량으로 채택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함.

□ 11인승 승합차를 임대가 아닌 유치원 혹은 교육청 소유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15인승 전용으로 생산된 통학차량을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9인승 승용차 혹은 11인승 승합차는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가 전 좌석에 장착되어 있어야 함. 동승자는 각각의 유아에 대해 착용을 지원하고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 전용 15인승 승합차의 경우는 유아 전용 좌석이 구비되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통학버스 이용 유아 수가 14명 내지 33명일 때 35인승 미니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 가능하고 해당 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함.

□ 34명 이상의 유아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5인승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확정하고 신고할 수 있음.

□ 45인승 일반버스를 이용할 시 탈부착 가능한 유아용 보호장구가 유아의 승차 전 좌석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동승자는 이를 일일이 매어주고 확인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 등에서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이 많아 단일 유치원만으로 차량 구입이나 운행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일부 권역을 획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 노선을 공동 계획하여 2~3개 유치원 유아들의 등하원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운영 방법은, 교육청에서 어린이통학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대하고 교육청 담당자의 업무 관리 하에 운행을 할 수 있게 함.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업체와 계약하고 이용 가능한 유치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활용성을 높임.

5.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충을 위한 제언

가. 단계적 통학버스 도입을 위한 우선 도입 유치원 선정

□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예외 없이 통학버스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운영의 면에서 가능하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통학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국·공립 유치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학버스 도입 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만함.

□ 통학차량 도입 우선 유치원 선정을 위한 조건의 예로 첫째, 등·하원 거리가 먼 유아의 비율이 높은 유치원, 둘째, 안전의 측면에서 유아 승·하차와 차량 주차 공간, 차량진입도로가 확보된 유치원을 들 수 있음.

1) 등·하원 거리가 긴 유아 비율이 높은 유치원 우선

□ 통학버스 도입 우선 유치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공립유치원의 대략적 통학권역 관련 자

료를 확보하고 거리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됨.

- 유치원 유아의 경우 최소 2~2.5㎞ 이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이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도보거리 지역 이내에 거주지가 있는 비율을 확인하고 비율이 낮은 지역의 유치원부터 도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볼 때,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등으로 유치원과 거주지 거리가 멀어진 곳 등이 가장 우선 대상이 될 것임.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구도심의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의 경우는 후순위가 되거나 전체 도보지역에 포함되어 차량도입 불필요 지역이 될 수 있음.

2) 차량 운행 안전이 확보된 유치원 우선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안전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들을 보면, 유치원 내 안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유아가 승·하차 하는 장소가 도보로 통학을 하는 유아나 초등학생으로 혼잡한 곳이어서 장소에 따른 위험성을 크게 보고 있음. 또한 대도시의 경우 유치원이 좁은 도로를 면하고 있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등 차량 진입이 힘든 곳이 다수임을 지적함.

□ 통학 거리 측면에서 우선 차량 도입 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할 지라도 주차장 시설과 승하차 공간의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를 갖지 못한 유치원은 그러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함.

□ 차량진입이 어려운 유치원의 경우는 도입 불가로 분류하고 도입필요 유치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차량 통합 운영

□ 개별 공립유치원이 아니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통합적으로 차량을 운영, 관리할 것을 제안함.

□ 본 보고서의 강원도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지원청(교육청 포함)은 차량과 운전자 등 인력이 대기하는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의 차고지, 기점으로 사용함.

□ 모든 차량은 교육청이 구입 또는 임대 계약하여 관리함.

□ 차량은 2개 이상의 유치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거주지와 유치원 위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동선을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면밀히 계획하고 이에 따라 차량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다. 차량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차량 공유

□ 차량과 운전자가 등원과 하원에만 업무에 활용되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차량과 운전자의 움직임과 대기시간을 모두 정보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그러므로 등원과 하원 간 사이 시간을 활용하여 유치원의 현장학습에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여 활용함.

라. 장기적 추진 방안: 미국식 스쿨버스의 도입

□ 미국의 통학버스는 어떤 차량보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에 대해 자부하고 있으며, 좌석을 촘촘하게 배치한 구획화(compartmentali- zation)를 적용하고 충격흡수장치를 좌석 뒤에 장착하여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차량을 타도록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유아에게 있어 안전벨트의 탈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전을 최대화한 어린이 통학차량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선호도 상승 및 높은 취원 희망률에 비해 실제 정원 충족률은 전국 평균 80%를 밑돌고 있음(교육부, 미발간).

-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로 통학 지원 차량이 없는 불편함을 들고 있으며(조선일보, 2019. 3. 7), 박창현 등(2018)의 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면담조사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통학버스 미운영이 공립유치원 취원율 미충족의 원인이 된다고 밝힘.

□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18.12.6)」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의 통학 편의를 돕고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음.

- 시·도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폐원·모집중지 등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 우선 지원을 추진함.

□ 유치원 통학버스는 사립유치원은 대부분(약 97%: 조선일보, 2019. 10. 11)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통학 거리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특수 지역을 중심으로만 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형태로는 유치원 단독의 통학버스 운영 또는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차량 공동 이용 등이 있으나,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소수 이용자 경우처럼 유치원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통학버스 운영 형태가 요구되고 있음.

□ '19년 7월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배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배치에 있어 종합적인 진단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공립유형(병설/단설)에 따른 운영 특성, 지역별 여건차이 등을 고려한 규모별 통학버스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함.
- 「도로교통법」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계 법령 및 제도를 근거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산재된 상황이므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법령 정리가 요구됨.
- 시·도교육청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지원 계획이 있으나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전반적인 기준 및 운영 사례가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이 필요함.

□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확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여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통학버스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를 돕고 어린이통학버스 확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둠.

2. 연구의 내용

가. 유치원 통학버스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유아수 규모별, 공립병설·단설, 지역별 특성 등 실태 파악

□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원인 분석

나. “유아수 규모별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 모델” 개발

□ 유치원 유아 수 규모에 따른 다양한 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시

- 유아 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차량 활용 방안 제시(예: 15인 이하 소형, 16~35인 이하 중형, 36인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등)

□ 규모 및 지역 상황에 따른 다양한 운영 형태의 제시

- 단독 운행, 공동 이용 등

다. 통학버스 업무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시·도교육청용/ 유치원용 통학버스 업무 처리 방법 수록 (업무 매뉴얼)

- 계약, 입찰과정, 통학버스관계자 교육 등 업무 처리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통학버스 관계자 필수 안전수칙 안내 자료 개발 (안전 매뉴얼)

-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 지켜야할 사항(예: 차량 내 잔존유아 확인) 등

라.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관련 지원 방안 제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강화에 따른 운영 방안 모색 및 지원 대책 마련

3. 연구 방법

가.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 규칙 등 법령 내용 확인 및 검토

□ 해외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이나 기준 등 운영 관련 사항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검토

나.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공유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개최

□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확대 방안 협의

□ 개최 일시 및 장소

- 1차: 2019. 4. 29./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
- 2차: 2020. 1. 16/ 교육부 회의실

다.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심층 면담 실시

□ 유치원 통학 버스 운영 사례 수집 및 현장 방문, 운영 문제점 등 파악

□ 현장 관련자 면담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표 Ⅰ-3-1〉 현장조사 및 면담 실시 일시 및 내용

차수	일시	지역	기관	면담자	주요내용
제1차	19. 5.21	경기	경기도교육청	담당 주무관	교육청의 역할, 확충 계획 등
제2차	19. 5.21	경기	A 단설유치원	원감, 담당교사	버스 운영 상 개선 필요사항 등
제3차	19. 6.10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 주무관	버스확충 계획, 운영 애로점 등
제4차	19. 9.23	강원	강원도교육청	담당 과장, 주무관	에듀버스 운영 방법 및 개선점
제5차	19. 9.23	강원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주무관	에듀버스 운영 방법 및 개선점
제6차	19. 9.23	강원	B 병설유치원	원장, 담당교사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7차	19. 9.23	강원	C 단설유치원	원장, 운전기사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라.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담당자 의견 조사 실시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또는 사무관을 대상 운영 관련 의견조사 실시

□ 실시 기간 및 방법

- 2019년 7월 24일 ~ 30일
- 이메일을 통한 자료 송·수신

□ 조사 내용

- 지역 내 통학버스 운영 현황, 확충 노력, 확충 방해 요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매뉴얼 개발 관련 내용 구성, 차량 플랫폼 업체 활용 등에 관한 의견

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관련 교육부 및 교육청 담당자와 지속적 협의

Ⅱ. 법적 배경과 해외 사례

□ 본 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의,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인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의 통학버스 관련 규정과 주요 사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함.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가. 도로교통법

1)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

□ 유치원 유아의 등원과 하원 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의 법적 명칭은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함. 이때 교육 시설에는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

□ 법 제52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는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이 됨) 이상의 자동차이며, 9인승 이상 차량이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도 가능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법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시설 운영자의 명의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규정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 시 주변 차량들이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영유아 탑승 표시가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주변 차량이 모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함.
-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모든 자동차는 앞지르지 못함.

□ 법 제53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유아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하며,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 좌석안전띠는 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 유아가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유아의 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할 의무를 지님.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유치원의 교직원 또는 지정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법은 동승보호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 보호자는 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모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신규 안전교육과 함께 매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의 종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사전에 받게 되는 '신규 안전교육'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강의나 시청각교육 형식의 교육으로 3시간 이상 받을 것, 교육 내용은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사고 시례 분석, 그 외 어린이 보호 필요사항 등으로 구성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교육감 등)이 실시하여야 함.

- 운전자는 안전교육 이수 이후 발급 받은 교육확인증을 통학버스 내부에, 운영자(유치원 원장 등)는 유치원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함.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라는 일반적·포괄적인 용어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포함되므로 이 법규의 모든 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해당됨. 이 법은 해당 차량이 갖추어야 할 안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모든 자동차의 법적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령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안전기준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차체 외관

□ 어린이통학차량은 차체 색상이 황색이어야 하고 어린이보호표지와 정지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함.

- 어린이통학차량 앞과 뒤에는 규정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어야 하며,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자동차규칙 제19조 제10항에 규정된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2) 좌석과 승강구

□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르면, 차량의 좌석이 접이식일 경우에 대해 외부조작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는 발판의 크기와 높이를 규정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발판이 미끄럽지 않아야 함.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규칙은 어린이운송용 차량이 갖추어야 할 표시 등의 색깔과 점멸 속도, 장착 위치, 밝기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규칙 제50조 제②항부터 ⑤항에서는 차량에 차체 앞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과 후사경 보조 영상장치 설치 필요도 명료화하고 있음.

-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를 보조하는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3) 안전띠 장착

□ 자동차규칙 제27조에서는 차량에 좌석안전띠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함,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규칙 제53조의2에 따르면, 차량은 '후방영상장치'와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어야 함.

□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또한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5)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 규칙 제53조의4에는 어린이를 운송하는 승합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장착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2019년 3월 21일 신설).

- 가장 뒷열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하는 구조임.
-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경고음 발생장치에 의한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 간격으로 발생시킴. 또한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규정 사례

가. 미국[1)]

□ 본 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미국의 통학버스 운행 기준으로, 유치원 유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유아(kindergarteners)를 포함한 전 연령의 아동, 청소년까지 통학

1) 미국 교통부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Department of Transportation-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ssociation)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제시함.

1) 통학버스 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 조치

가) 통학버스의 특징 및 운전자 자격 요건

□ 통학버스는 눈에 띄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별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됨.

- 빨간색 점멸 표시 등
- 크기, 길이, 색상(노랑) 규정
- 크로스 뷰 (버스 전방 하측 확인 가능용) 거울
- 정지 표지판(stop sign arms) 장착
- 안전장치 장착 좌석
- 높은 충돌 기준(high crush standards)
- 전복(rollover) 방지 기능

□ 운전자의 필수 자격 요건

- 학생 행동 제어 교육 이수
- 약물 및 알코올 검사
- 운전 기록 확인
- 안전 및 보안 절차 교육 이수
- 응급의료 처치 교육 이수

나) 「통학버스 보호 법」

□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어떤 방향에서든 다른 차량이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은 불법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승하차하는 학생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함.

2) 통학버스의 안전벨트(seat belt) 규정

가) 대형 통학버스

□ 버스 좌석 배치를 특별하게 함으로써 승객에게 충돌 방지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적용하여 별도의 안전벨트가 불필요함. 즉, 안전벨트 대신 구획화를 통해 각 좌석에는 충격흡수용 등받이가 있고 간격을 매우 밀접하게 배치하여 좌석 승객을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나) 소형 통학버스

□ 소형 통학버스(차량 중량 약 4.5톤 이하)는 모든 좌석에 2점 또는 3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장착해야 함.

3) 버스정류장 안전 지침

□ 학생이 직접 버스를 마주치게 되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부모에게 가이드를 전달함으로써 자녀의 버스정류장 안전 지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가) 학부모 가이드

- 자녀는 버스가 도착하기 최소 5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도록 해야 함.
- 미리 버스 정류장을 방문하여 자녀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곳을 보여 주어야 함.
- 차도-보도 경계석에서 적어도 세 걸음(6피트)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야 함.
- 버스 정류장은 뛰거나 노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상기시켜야 함.
- 버스가 도착하면 자녀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함.
- 자녀는 학교 버스 뒤로 걸어서는 안 됨.
- 자녀가 버스 앞의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 횡단하기 전에 버스 앞에 적어도 5걸음(10피트) 떨어져서 걸어가도록 안내함.
- 자녀는 횡단하기 전에 버스 운전사와 눈을 마주보고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버스 근처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버스 운전사가 그 물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집어 들지 않도록 하며 운전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지도해야 함.

나) 운전자 가이드

- 진입로나 차고를 나갈 때는 걷는 어린이들이나 자전거 등교생 주의
- 천천히 운행하며 특히 보도가 없는 경우 거리에서 보행하는 어린이들 주의
-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노는 어린이들 주의
- 늦게 도착하는 어린이는 교통 상황과 상관없이 거리로 뛰어 들 수 있음을 명심하기
- 학교 버스 법률의 준수. 통학버스의 점멸 신호등 시스템의 적절 사용
  - 노란색 점멸 표시등은 버스가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준비함을 나타냄.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늦추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함.
  - 빨간 점멸 표시등과 정지 표지판은 어린이 승하차로 버스가 정지함을 나타냄.
- 주변 차량은 멈추고 빨간 불빛이 깜박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함.

나. 영국[2)]

1) 아동 교통 안전 대책 수립

□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2010년 도로교통안전중장기계획 2020(Scotland's road safety framework to 2020)을 수립함.

- 아동 교통사고 감소를 주요 목표로 둠.
- 2020년까지 16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를 50%까지 줄이고 부상자는 65%까지 감소함이 목표

□ 정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하교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통체증과 이산화탄소 감소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의 증진을 들었음. 이를 위해 차 없이도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걷기와 자전거 등하교를 장려하며 이는 학교법과 수월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에서도 강조됨. (※ 스코틀랜드 정부에 따르면(2019년 통계), 연간 680,000명의 학생이 스코틀랜드 전역의 2,722개 학교로 등하교 하고 있음.)

2) 영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발간 "Home to school travel and transport guidance: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2016)와 스코틀랜드 국토교통부(Ministry for Transport and Infrastructure)의 "A Guide to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2010)를 근거로 작성함.

2) 법적 규정

가) 법적 도보 거리

□ 8세 미만 아동은 최단 거리 2마일(약 3.2킬로미터), 8세 이상은 최단거리 3마일(4.8킬로미터) 내에 거주할 경우 등하교는 도보로 함.

□ 지자체는 도보거리 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

- 일정 거리 혹은 전체 거리에 대해 교통수단(자전거 혹은 다른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함. 이 때 교통 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원함.

□ 도보거리 이내에 거주하더라도 학교까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일 경우는 지자체의 교통 지원이 있어야 함.

나) 법적 "보호의 의무" (duty of care)

□ 지자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 법적 의무"(a common law duty of care)를 가지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에 대해서 또한 책임과 의무를 짐.

다) 통학버스의 요건

□ 2001년 10월 1일 이후 모든 대형버스, 미니버스, 일반버스(시내버스 제외)는 안전벨트를 갖추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무릎 벨트(lap belt: 2점식) 구비를 최소한 요건으로 함.

□ 통학버스 좌석은 전면을 향해야 하고 후면이나 측면을 향한 좌석은 허용되지 않음.

□ 운전자는 아동들의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 미니버스의 운전자는 3세부터 13세까지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14세 이상은 승차자 본인에게 벨트착용의 책임이 있음.

□ 모든 통학버스는 학생들을 태우는 중에는 반드시 노란색 통학버스 반사 표지판이 버스 앞과 뒤에 모두 부착되어 있어야 함. 학생들을 운송 중일 경우가 아닌 때에는 운전자가 이 표지를 제거하는 것이 권장됨.

□ 통학버스표지판(school bus sign)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최소 크기를 지켜야 함. 최대 크기 규정은 없음.

- 표지의 규정 크기:
  앞 - 최소 250×250mm 표지 + 20mm이상 나비 검은색 경계선
  뒤 – 최소 400×400mm 표지 + 30mm이상 나비 검은색 경계선

□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관리자 등 모든 관련자는 「아동보호법」에 따라 모든 범죄기록이 공개됨.

라) 통학버스 운행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 표준 사항(권고 사항)

□ 아동들의 등하교용 운행이 아닐 경우는 '통학버스' 표지를 떼어 놓을 것

□ 크고 눈에 잘 띄는 선명한 '통학버스' 표지가 있을 것

□ 학생들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 위험 경고등이 반드시 작동할 것

□ 3점식 안전벨트 장착되었을 것

□ 모든 아동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교사(동승자)가 지도하도록 운행자는 지원할 것

□ 운행자는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아동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차 내에서 시범을 보여야 함.

□ 버스에 CCTV가 장착되어 있을 것

□ 운전자는 최소 3년 운전 경험이 있을 것 (버스 운전자는 3년의 버스 운전 경험을 요함)

□ 운전자는 최소의 연령요건(25세 기준 권고)을 넘어설 것

□ 운전자는 방어운전교육 혹은 비슷한 수준의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할 것

□ 정해진 규칙(예를 들면 통학버스표지 게시)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벌점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 위반의 경우는 계약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3-15세 아동을 수송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음.

※ 통학버스는 공공차량규정에 따라 14세 이하 아동이 탈 경우 성인 2명용으로 제작된 벤치형 좌석을 3명이 사용할 수 있음.

다. 일본[3)]

1) 통학버스 운행 특징

□ 일본의 통학버스는 인구밀도가 낮거나 학교가 적고, 겨울철에 도보나 자전거 통학이 어려운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되며 결과적으로 홋카이도 지역에 많음.

가) 통학버스의 종류

- 학교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여 운행하는 법규상 자가용 버스와, 도로운송법 제3조 2항에 의거한 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정버스)으로 버스사업자 또는 택시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있음.

나) 법적 보호 장치

□ 도로교통법 제11조 2의 3에서 승강중인 통학버스를 차량으로 지나갈 때는 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

□ 도로운송차량의 안보기준 제18조 9에 유치원, 초·중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송영에 종사하는 승차인원 11명 이상의 버스에는 차체 전후좌우에 표식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2) 유아전용 통학버스 요건 및 추가 안전 장치

가) 전용차량의 필수 요건

□ 추가적 보조석 및 입석은 금지되며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함.

□ 유아전용일 경우 탈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전벨트는 면제됨

□ 운전자의 반대 쪽인 버스의 좌측면에 유아용 승강구가 있어야 함

□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소화기 설치 필수

□ 유치원 버스의 경우 유아전용차량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함.

---

3)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차량안전대책검토회(車両安全対策検討会)가 2014년 발간 "유아전용차의 차량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료 작성함.

※ 유아전용차량 안전벨트 면제의 이유
- 위급한 화재나 사고 시 탈출이 필요할 때 유아 스스로 탈착하기 어려움.
- 인솔하는 교사가 승차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을 확보하기 쉬움.
- 좌석 자체를 작게 만들어 움직이기 어려움.
-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체격이 커짐.
- 승차 때 안전벨트의 조정이 필요함.

나) 유아전용차량의 승강구

□ 유치원 버스 문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사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음.

□ 자동문으로 된 유치원 버스도 있는데 인터록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기를 밟아도 발차할 수 없는 구조임.

□ 닫을 때는 예고부저가 울린 후 몇 초 뒤 문이 닫힘.

□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램프와 경고부저로 운전기사에게 알림.

다) 차량의 그 외 안전장치

□ 승하차하는 문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는 미러가 붙어 있음. 이는 일반 버스와 동일

□ 유치원버스가 정원이 많은 중형버스이거나 운전기사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동승하는 보육교사의 안전 확인 작업, 후방확인, 문의 개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안전 확인 미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유치원버스도 대부분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고, 후방 안전 확인 모니터 부착.

□ 도로정체로 늦어지기 쉬운 유치원버스의 현재 위치를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리얼타임으로 알려주는 GPS위성진행시스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비디오텔레비전까지 탑재한 관광버스와 같은 장비를 갖춘 도시 유치원버스는 하이테크장비를 설치하고 있음.

Ⅲ.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 1절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통학버스 확충을 위한 자체적 노력 및 이에 대한 장애물, 그리고 운영 매뉴얼 제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요약함.

□ 2절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청과 유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운영의 어려움과 확충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1.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및 확충 현황

가. 운영 현황

□ 시·도교육청별로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 현황을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표 Ⅲ-1-1〉에 제시함.

□ 전체 국공립유치원 4,816개원 중 1,928개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40%의 운행률을 보임.

□ 국립유치원은 3개원 모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100%의 운행률을 보임. 단설유치원은 408개원 중 250개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61%의 운행률을 보이며, 병설유치원은 4,405개원 중 1,675개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단설유치원보다 낮은 38%인 운행률을 보임.

□ 단설유치원은 총16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교육청에서 95%이상의 통학버스 운행률을 보임.

□ 병설유치원은 전체 4405개원 중 1,675개원에서 2,613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75%인 1,969대가 본교인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고 19%인 497대만이 유치원 단독 이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158대의 유치원 통학버스가 교육청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충남 5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153대 모두가 강원도 교육청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통학버스를 소유, 관리, 운영하고 관할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에듀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표 Ⅲ-1-1〉 전국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2019. 9. 1. 기준)

지역	구분	유치원 수 (개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				통학버스 이용 현황				
			운영 유치원 수 (개원)	운영형태		소계 (대)	단독 (대)	공동차량		소계 (대)	이용 유아수 (명)
				직영 (대)	임대 (대)			초등학교 (대)	교육청 (대)		
전국	국립	3	3	1	5	6	6	-	-	6	202
	단설	408	250	120	324	444	427	6	11	444	19,764
	병설	4,405	1,675	1,241	1,372	2,613	497	1,969	147	2,613	23,907
계		4,816	1,928	1,362	1,701	3,063	930	1,975	158	3,063	43,873
서울	단설	31	1	0	1	1	1	0	0	1	30
	병설	211	0	0	0	0	0	0	0	0	0
계		242	1	0	1	1	1	0	0	1	30
부산	단설	21	10	0	10	10	10	0	0	10	821
	병설	87	11	0	11	11	9	2	0	11	175
계		108	21	0	21	21	19	2	0	21	996
대구	단설	20	8	0	26	26	26	0	0	26	892
	병설	91	3	0	4	4	1	3	0	4	19
계		111	11	0	30	30	27	3	0	30	911
인천	단설	13	13	4	39	43	43	0	0	43	1045
	병설	156	18	10	17	27	4	23	0	27	190
계		169	31	14	56	70	47	23	0	70	1235
광주	단설	11	0	0	0	0	0	0	0	0	0
	병설	119	23	1	28	29	15	14	0	29	376
계		130	23	1	28	29	15	14	0	29	376
대전	단설	10	7	0	7	7	7	0	0	7	377
	병설	91	12	0	12	12	5	7	0	12	171
계		101	19	0	19	19	12	7	0	19	548
울산	단설	7	7	4	6	10	10	0	0	10	774
	병설	82	44	4	40	44	37	7	0	44	1315
계		89	51	8	46	54	47	7	0	54	2089
세종	단설	38	0	0	0	0	0	0	0	0	0
	병설	19	18	7	14	21	7	14	0	21	241
계		57	18	7	14	21	7	14	0	21	241

지역	구분	유치원 수 (개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				통학버스 이용 현황				
			운영 유치원 수 (개원)	운영형태		소계 (대)	단독 (대)	공동차량		소계 (대)	이용 유아수 (명)
				직영 (대)	임대 (대)			초등학교 (대)	교육청 (대)		
경기	단설	92	49	19	45	64	64	-	-	64	3,022
	병설	1,087	131	79	83	162	5	157	-	162	964
계		1,179	180	98	128	226	69	157	-	226	3,986
강원	국립	1	1	-	2	2	2	-	-	2	50
	단설	23	23	38	8	46	34	1	11	46	1,680
	병설	243	208	147	128	275	48	85	142	275	2,490
계		267	232	185	138	323	84	86	153	323	4,220
충북	국립	1	1	·	2	2	2	·	·	2	86
	단설	24	15	4	23	27	22	5	0	27	1103
	병설	213	29	76	135	211	30	181	0	211	1739
계		238	45	80	160	240	54	186	0	240	2928
충남	국립	1	1	1	1	2	2	·	·	2	66
	단설	23	22	8	35	43	43	0	0	43	1757
	병설	345	291	88	304	392	91	296	5	392	4319
계		369	314	97	340	437	136	296	5	437	6142
전북	단설	21	21	22	20	42	42	0	0	42	1573
	병설	337	256	169	175	344	30	314	0	344	2041
계		358	277	191	195	386	72	314	0	386	3614
전남	단설	26	26	2	29	31	31	0	0	31	2281
	병설	406	80	205	100	305	80	225	0	305	3154
계		432	106	207	129	336	111	225	0	336	5435
경북	단설	18	18	2	22	24	24	-	-	24	1,396
	병설	431	365	271	242	513	129	384	-	513	5,580
계		449	383	273	264	537	153	384	-	537	6,976
경남	단설	30	30	17	53	70	70	0	0	70	3,013
	병설	387	168	164	79	243	6	237	0	243	1,049
계		417	198	181	132	313	76	237	0	313	4,062
제주	단설	0	0	0	0	0	0	0	0	0	0
	병설	100	18	20	0	20	0	20	0	20	84
계		100	18	20	0	20	0	20	0	20	84

나. 통학버스 확충 추진 현황

□ 시·도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통학버스 운영 유치원 확충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고하도록 조사 설문을 진행함.

□ 조사결과는 아래의 〈표 Ⅲ-1-2〉와 같음.

□ 각 시·도 교육청별로 차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9년부터는 차량지원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도 하였으며,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을 확충하는 등 유치원 통학차량 확대를 위한 교육청 입장에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징적 사례로, 인천의 경우를 보면 2019년 3월부터 장애아 또는 농어촌 통폐합 단설유치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일반 유아 및 인천시 관할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했음.

- 경기는 지자체 예산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소규모병설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대여 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 전남은 유아의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임차비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Ⅲ-1-2〉 시·도 교육청별 통학버스 확충 추진 현황

시·도	현 황
서울	○ 통학버스 희망 공립유치원에 버스제공을 통해 충원율 확대와 학부모의 불편 해소 시급함 ○ 버스지원 시 차량도우미 및 용역계약 필요, 유치원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가 필요
부산	○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수요조사 실시 - 방법: 유치원별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문조사, 자료집계를 통한 기관(유치원) 의견 수렴 ○ 당초 유치원 통학차량 21대에서 2019. 9월 22대로 1대 증가
대구	○ 교육지원청별 통학운행 노선의 검토를 통한 학생통학편의 및 예산절감 운행계획 시달 ○ 교육지원청별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공립유치원 추가모집 유아들에게 통학 편의 제공
인천	○ 2019. 3월: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 일부 유아와 농어촌·도서지역 및 통폐합 단설유치원에 한정 지원하던 운영 범위를 일반 유아 및 인천 관내 전체 공립유치원으로 확대) ○ 2019. 3~4월: 관내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2019. 7월: 1차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수요조사에 따른 희망 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10개원, 811백만원, 2학기부터 확대 운영 예정)
광주	○ 현재 공립유치원 18개원에 통학버스 운영 예산을 배부하고 있음 ○ 소규모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음
대전	○ 통학차량 지원을 위한 유치원 수요조사 실시(학부모 이용수요 파악 후 신청 독려)
울산	○ 2학급 이상 지원기준 충족 유치원 희망 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44개원 47대 운영 중 (전체 공립유치원 수 대비 49.4%) ○ 농산어촌 지역 통학버스 운영 초등학교와 연계한 통학버스 공동이용 - 7개원 7대

시·도	현 황
세종	○ 통학차량 지원 조례 재개정 추진 ○ 시청 비법정전입금으로 통학차량 예산 요청 ○ 원거리 통학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증차 지원 ○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 (4천만 원)
경기	○ 농촌지역 소규모병설유치원 유아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대여 제도 도입 검토 ○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자발적 노력으로 지자체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학차량 운영 ○ 지자체 협력을 통한 대응지원 사업 추진으로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 통학버스의 필요 조사를 통해 통학 차량 배치 ○ 통학차량을 신규 및 추가 배치한다면 편익분석을 통해 정확히 진단 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강원	○ 180여대의 에듀버스(통합운영 직영통학차량)를 통해 공립유치원 어린이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130여대의 공립유치원 통학용 임차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도내 공립유치원의 90%에 근접한 231개 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운영하여 공립유치원에 재원한 유아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충북	○ 현재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신규 증차 신청 시 지원 대상 유치원의 유아의 거주 지역 인근 공립유치원 유무 여부 및 탑승대상 유아수, 운행노선, 운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충남	○ 2018대비 2019년 통학차량 지원대 수 16대 증가, 419백만 원 증액
전북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학교, 특수학교, 단설유치원 학생 통학 전면 지원 ○ 도시 농촌동지역 초등학교 및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까지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인접학교 및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공동이용
전남	○ 유아의 안전한 통학편의 지원을 위한 임차비 및 택시비 지원
경남	○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통학버스 TF를 구성하여 수요조사 실시하여 지원 요인 발굴 ○ 통학버스 확대 관련 세부 지원 기준 마련 후 2020. 본예산 반영
제주	○ 공립유치원은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학차량 확충 계획 없음 ○ 1~2학급 읍면지역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보유 차량을 공동이용

다. 통학버스 확충의 장애물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차량 확충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음. (표 Ⅲ-1-3 참조)

□ 첫째, 유치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임.

- 통학버스 운영 시 안전관리, 운영계획수립, 안전교육 이행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노선이나 승하차지점 변경 등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둘째, 물리적으로 차량 주차 공간 부족이나 차량 진입 불가능 유치원이 다수임.

- 도보통학 유아가 드나드는 유치원 정문을 차량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으므로 안전하게 유치원에 차량이 진입하고 주변에 유아 출입이 없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

□ 셋째, 교육청 및 유치원 관련 예산 확보가 우선 필요함.

- 직영의 경우 인건비 확보 필요, 통학버스 운영지원비 예산 소요액 증가
- 임차의 경우는 지속적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 차량 확대가 어려움.

□ 넷째, 안전 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큼.

- 차량의 안전사고 등 운행 안전 문제, 안전요원 확보 및 관리 문제 등 어려움 있음.

□ 다섯째, 직영 시 인력부족 및 이용 효율화 문제가 있고, 임차 시는 어린이통학차량 확보가 어려움.

- 대부분 지역에서 동승자와 운전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버스기사의 근무시간 활용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함.
- 임차 시 유아안전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 확보가 어렵고 계약 대상 변경으로 운영 환경변화가 잦을 수 있음 등이 장애가 됨.

〈표 Ⅲ-1-3〉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인식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충의 장애물

한 계 점
ㅇ 직영 통학버스 운전근무자의 운전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ㅇ 유치원 처음학교로 시행 전 해당 원의 통학버스 운영 여부에 대한 대국민 공시 필요
ㅇ 유치원 내 주차 공간 및 차량 진입통로의 확보 등 유치원 환경개선에 대한 선행 필요
ㅇ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사고위험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유치원에서 통학버스 운영에 소극적인 상황
ㅇ 통학버스 확충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
ㅇ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과도한 민원 발생, 안전관리, 인력부족 등으로 개별 유치원의 업무 과중
ㅇ 통학버스 운영 시 유치원생들의 안전 관리 문제
ㅇ 직영차량의 경우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인력 확보의 어려움
ㅇ 전세버스의 경우 매년 입찰을 통해 임차용역계약이 이루어져 버스, 운전원 등의 통학버스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동됨
ㅇ 인근 도로가 협소하여 통학버스 운행의 어려움
ㅇ 통학버스 노선 결정의 어려움
ㅇ 일부 지역의 통학버스 임차 업체의 부족으로 인한 계약 체결의 어려움
ㅇ 일부 시군단위 지역의 경우 통학버스 임차차량의 공급이 부족

라. 업무 매뉴얼 개발 관련 요구

□ 시·도교육청 유치원 통학버스 업무 담당자들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업무 매뉴얼 개발 시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정리함.

□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한 안전점검체크리스트이나 각종 서식, 사고 대처 방법 및 관련 법적 근거, 계약절차, 안전확보방법 등 안전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Ⅲ-1-4에 제시됨.

□ 특히 안전 관리 관련이나 승하차 안전 강화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1) 버스 안전 관리 관련

가) 카시트 유아별 상이한 크기 반영 필요, 탈부착 어려움

□ 유아용 카시트 구조상 사고 발생 시 쉽게 풀고 차 밖으로 나오기 어렵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따른 카시트 설치 의무 확인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의무 관련 안내 및 구체적 지침이 필요함.

나)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매뉴얼 통일

다) 안전 장비 구비 방안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 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

□ 기존 구입된 유아용 보호 장구의 적정성 문제로 KC 인증을 위해 기존 구입한 유아용보호장구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2점식 시트에 추가 안전장치 장착 후 3점식으로 KC 승인하는 방법이 제안됨.

2) 승하차시 안전 강화

□ 승하차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책임관 또는 교사의 확인 의무 등과 같이 안전한 승하차 관리가 필요함.

□ 위치알림서비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카시트, 유아용 보호 장구 규격 및 구축 방안과 지침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매년 통학차량 임차 계약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차차량 계약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Ⅲ-1-4〉 시·도 교육청 통학버스 담당자의 매뉴얼 구성 의견

필요 사항
○ 통학버스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통학버스 임차계약 시 계약 조건 등 유의사항 ○ 통학버스 운영 관련 각종 서식 ○ 교외 체험활동 시 업무 추진 절차 ○ 통학버스 운영 유치원 업무 및 역할(통학버스 안전관리, 통학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 등) ○ 통학버스 교육지원청 관리 사항(통학차량 실태 지도 및 점검사항, 운영비 지원 및 집행 등) ○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등 차량운행 시 안전사항 등 일체
○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근거 및 기준 ○ 통학차량 노선관리 및 선정 방법 ○ 통학버스동승보호자(안전요원) 운영 방법(채용 및 관리지침) ○ 통학차량 계약 방법(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의 예시) ○ 통학버스 운영 예산 지원 범위 ○ 통학버스 안전 운영 및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
○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업무 순서 (관리 주체의 명확화 포함) ○ 통학버스 관련 유아 안전관리 내용 ○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자 안전교육 내용,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수칙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및 법적 근거 안내 ○ 통학차량 운영 관련 협의회 시 필수로 논의해야하는 내용 ○ 통학차량 코스 선정 시 유의사항 ○ 학부모 수요조사서 및 신청서 서식 ○ 교육청뿐만이 아닌, 전세버스 업체 등 다양한 관련 담당자의 의견 조사 결과 반영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및 해석 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절차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및 통학차량알리미 앱 설치 관련 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 절차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종류 및 의무설치사항 등
○ 초등학교와 공동이용하는 소규모 유치원의 통학버스 활용 지원 방안

2.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사례

가. 교육청 사례

1) 광주광역시

가)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

□ 18년도: 110개 국·공립 유치원 중 15개원에서 17대를 사용

□ 19년도: 3개원이 추가되어 현재에는 18개원에서 총 20대 운영 중

□ 시 교육청에서는 운영이 원활한 단설보다는 정원 충원율이 낮은 병설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대상으로 계획함. 병설의 경우 80%이하 충원율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신청률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내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자차로 등·하원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통학버스가 적극적으로 확대된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등하원의 부담이 경감할 것이며 또 지역의 특성상 원거리 원생들도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운영이 유용하겠네요."(주무관B)

나) 교육청의 역할과 내용

□ 원가 계산 관련 업무를 통해 계약 및 지원을 담당함.

- 통학버스 전자입찰 전, 공정한 원가계산을 위한 원가계산비(700,000원)를 책정 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실제소요 예산을 편성. 이때에 운영비, 인건비, 차량동승자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함.

□ 단가는 차량 규모와 노선별로 차이가 있는데 크게 25인승, 35인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노선이 길어지면 단가는 비례적으로 상승함.

□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 없이 전액 교육청의 지원으로만 이루어짐.

"교육청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지만 그에 따른 수요가 소극적일까봐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주무관B)

□ 통학버스 관리 면에서, 교육청에서는 규정에 맞는 안전장비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편성하는 차량을 점검 및 전반적인 관리의 업무를 담당함.

□ 현재 구체적인 안전장비 지침과 예산이 계획 중에 있어 편성이 이루어진 후 각 원의 수요에 맞게 분배할 계획임.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견

(1)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수요

□ 학부모들은 유치원통학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으나, 이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유치원은 버스 안전사고 위험 등의 책임감 때문에 적극적 수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 해당 업무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통학버스 관련 책임 소재 부분을 높이면 좋을 것임.

□ 통학버스 운영 확대 부분에서는 각 유치원에서 자체적인 차량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역청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 부담이 경감되므로 현장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버스 플랫폼 업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실질적인 이용이 힘들 것으로 봄.

"서울이나 경기지역에는 규모 적으로 지역의 분포가 넓기 때문에 수혜자가 많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은 지역의 특성상 수익분배상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주무관B)

(2) 현장학습 지원 버스 사용의 어려움

□ 영유아와 초중등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전과 관련된 요건으로 법제화 된 기준에 의해 의거되는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유아용 보호 장비 장착 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임. 이러한 조항에 의해 현재 차량 용역회사 입장은 통학차량 이후 개별적인 차량 활용이 어렵고 또한, 유아용 보호 장비를 사용 시마다 설치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입찰이 소극적인임.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학습용 전세버스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3) 추가: 사립학교 통학버스의 운영 문제

□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상운송 허가 절차가 복잡함.

□ 유상운송 허가 관련, 현재 자차를 사용하는 유치원은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

2) 경기도

가)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

□ 경기도의 단설유치원의 경우 현 92개원 중 49곳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은 특수한 3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병설유치원은 모두 미운영 중

□ 차형별로 구분을 하여 지원 기준의 차등에 따라 운영

- 승합용 소형: 15인 이하로 자차 2,704천원/임차 30,000천원
- 중형: 16인 이상 35인 이하로 자차 3,803천원/임차 40,000천원
- 대형: 정원 36인 이상으로 자차 6,708천원/임차 45,000천원

□ 자차의 운영비 지원은 차량 및 운전원, 통학도우미 인력 비용을 포함.

- 임차비를 지원하는 경우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지만 인건비 지원은 없음.

□ 농어촌의 경우 초등학교 차량을 병행하여 운영하는데 152개 유치원이 이에 해당

나)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방식

□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통학버스 관련 직원의 임용방법 (계약절차, 방법, 기간 등)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도우미를 포함한 입찰을 계획 중에 있음. 만약 유치원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업무량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육청에서는 비용 지원하되, 관리는 유치원의 자율에 맡김.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점검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관리 및 관련 담당부서를 통해 그 예산을 각각의 유치원으로 분배하면서 기타 추가 항목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부연하여 지원하기도합니다."(주무관A)

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개선 사항

"현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대부분의 단설 유치원의 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계획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데, 유치원장들은 안전문제 및 책임소재로 대부분 원하지 않는 분위기인 반면, 학부모들은 적극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주무관A)

□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의 단설 유치원의 경우, 80% 이상의 유아가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92개의 유치원 중 49개원이 희망 요청을 했으며 그 중 단 7개원에서만 실제 신청이 이루어졌음. 이처럼 신청이 소극적인 이유로는 원 내의 행정적 업무량의 증가와 복잡성이 예측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병설유치원의 경우, 안전성과 편리성을 따라 1.5km 내를 통학거리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반경 통학버스의 주정차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교문에서부터 유치원까지 도보적인 거리도 고려 대상이 됨.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각 지역청에서 차량 운영 현황 업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는 업무량 증가로 추가적인 인력이 제공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관리 및 업무는 각 유치원장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주무관A)

라) 기타 의견

(1) 업무 매뉴얼 제작 관련

□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매뉴얼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음. 그러나 안전 및 차량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필요함.

- 현장 유치원에서는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안전 매뉴얼이 필요함.

□ 정부 각 부처마다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에 대한 대책의 통일성이 없음.

(2) 통학버스 운영 방식 관련

□ 플랫폼 업체를 접목시킨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일임할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서는 업무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교육청에서도 또한 예산 감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통학버스 유아보호용 장비에 대한 지원 비용이나 설치 운영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필요함.

3) 강원도

□ 강원도에서는 '에듀버스'라는 명칭으로 일부 유·초등 통학버스 운영을 교육청의 책임하에 진행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권역을 묶고 하나의 차량이 한 개 이상 학교를 운행하도록 함.

가) 에듀버스 제도의 특징

□ 초등학교 벽지학생들을 위한 버스 지원, 통폐합 학생들의 통학, 유치원 통학의 버스 운영을 '에듀버스'로서 종합적으로 조직 및 관리.

"총괄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은 타시·도의 버스운영과 달리 교육감 소속 운영 과제로써 진행이 되어 시범을 걸쳐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출퇴근을 지장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주무관C)

나) 운영 방식

□ 기존의 학교 및 유치원 소속으로 단독 운영 체제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하여 등하교 및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사용이 가능함.

다) 예산

□ 에듀버스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차고, 주류비, 노후차량 교체비 등

□ 인건비: 단위 학교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10명)되어 운용됨.

□ 차량 운영비: 센터의 차고지 공간의 비용을 포함함.

□ 유아용 안전장비도 별도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설치하여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별도로 안전장비를 구매하거나 차량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 인력이나 차량구입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30대에 해당하는 차량은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함.

□ 과거 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했던 예산이 절감되어 전반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음.

라) 교육

□ 동승자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안내 정도로만 진행함.

□ 운전원은 의무교육으로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도로교통공사에서 의무교육을 진행함.

마) 한계점

□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심의 목적이었지만 중고등학생도 이용하고 있어 민원의 증가와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버스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심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에는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어서 노선과 탑승 문의와 같은 민원들이 증가했어요. 당초 목적보다 중고등학교 측에서의 문의가 유치원보다 많은 편이에요"(주무관C)

□ 일부 유치원의 경우, 기존의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했던 버스를 에듀버스 도입 이후 생긴 제약들로 불편함을 나타내며 장시간 버스를 타야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도 어려움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학부모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운행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운전원이 단시간에 두 번 씩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과속 부분이 늘 염려되는 부분이에요"(주무관C)

바) 향후 계획

□ 인건비 총액으로 방식으로 버스 확대 시 인력도 증원되는 시스템으로 즉, 운전직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직군의 수를 감소시켜 인력의 비율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4) 충청남도

□ 지원형태: 차량구입에 의한 초기 투입 비용 과다 및 운전원 정원 확보 등 직영 운영 방식은 어려움이 있어 임차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기준: 돌봄 운영으로 통학차량비 지원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차량과 공동 이용이 어려운 유치원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지원제한: 초등학교 통학차량 활용이 가능한 병설유치원(공동운영 포함) 및 단설유치원에는 지원(총무과에서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운행시간 장기(30분 이상) 소요 시 통학차량 지원 신청이 가능함.

□ 지원금액: 상시운영 통학차량의 경우 계약금액을 지원 중이며, 방학 중 운영 차량에 대해서는 기준 단가에 의거 지원 중임.

- 대형: 운영일수×201,000원 (유아수 32명 이상)
  중형: 운영일수×181,000원 (유아수 24~31명)
  소형: 운영일수×166,000원 (유아수 10~23명)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동승보호자"의 인건비(1일 2시간) 지원함.

5) 전라남도

□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2019. 3월 기준)

구분	공립유치원수	통학버스			통학택시
		직영	임차	소계	
단설	26	2	31	116	
병설	381		83		168
계	407	2	114	116	168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통학차량 공동이용 가능

□ 총 284대를 현재 운영 중임. 초등학교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함. 통합차량 미배치의 경우 유치원이 차량을 인수하여 초등학교와 같이 탈 수 있도록 운영 중임.

□ 도서벽지에 위치한 유치원이 많아 택시도 함께 운영 중임.

- 택시에는 부모, 교직원, 안전지도요원이 동승하고 있음. 학교 실정에 맞게 동승인원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임.

- 택시는 1일단가로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고 있음(노선파악 용이), 조합 및 개인과 모두 계약하고 있음.

나. 유치원 사례

1) 경기도 A 공립단설유치원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 운행 시간 및 횟수

- 교육과정 반 등원시간은 08:00~9:30으로 총4회의 등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
- 하원은 연령 별로 시간이 상이한데, 만 3세는 13:40, 만 4세는 14:10, 만 5세는 14:50로 3차례 차량이 운영 중
- 방과후 반은 17:00, 17:30 2회 운영으로 총 5번의 하원 차량이 운행 중

□ 이용 유아 수

- 현원의 절반 이상인 70여명이 이용함.

□ 차량

- 차량은 21인승의 임대차량으로 19석 탑승이 가능하며 운전자 외 안전요원 1명이 동승하고 해당 유치원에서는 동승자를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채용함.
- 기타 특이 사항으로는 동승자의 규정된 하루 근로시간에 맞추기 위해 동승자는 등원과 교육과정반 차량 운행 시에만 동승을 하고, 방과후 반 하원은 추가적으로 교육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 동승함.

□ 예산

- 통학버스 입찰의 단가는 해마다 상승 추세로 총 비용은 교육청 제시단가에 준하여 한 대당 차량 도우미와 운전자 포함 예산으로 약 4,000만 원이하로 추정할 수 있음. 단 운전자는 용역으로 임차에 포함하여 계산함.

"작년까지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별도로 차량보조도우미 비용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익자부담 제도를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용자 부담으로 월 5,0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정해보면 대략 2~300만 원의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실제 올해 예산은 5~600만 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행정실장D)

나) 통학버스 운영 방식

□ 현재 ○○ 공립단설 유치원은 전세버스 차량을 임차 형태로 운영 중으로 차량의 소유자는 운전기사로 보통 회사 소속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입찰가에 유류비는 포함됨.

"입찰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차량의 노후화로 생길 기타 소모품 비용이나 혹시나 생길 안전 문제와 같은 관리 차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입찰 회사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 내에서는 업무가 줄어들기도 하고 책임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갖기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원감D)

□ 입찰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매 3월~이듬해 2월까지로 정하고 재계약이 불가하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재입찰을 진행해야하는 한계점이 있음.

"○○ 유치원은 통학차량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차량 도우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통학버스 노선에 따른 다양한 학부모들의 요구들까지 전담하고 있는데요, 학기 초에 미리 탑승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가능 여부 조사까지 진행 후에 시간과 거리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제작해요. 한번 정해진 노선은 추후에 변동은 없고, 시내버스 운영과 유사하게 정해진 탑승 장소를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는 형식이에요."(행정실장D)

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개선 필요 사항

□ 차량 이용자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비용 기준의 필요성

- 해당 유치원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단가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주변의 유치원의 비용과 비교, 평균하여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구체적인 비용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대체인력 부재

- 근무 직원 결원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인력이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 보호장비 장착 규정으로 인해 현장체험용 전세버스의 이용이 제한적

"통학차량 안전 지침 관련 법제에 따라 모든 차량 내 보호 장비가 필수적이에요. 물론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유아들이 탑승할 때마다 설치해야 하고, 버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또 설치한 안전장비를 분리시켜야하니 번거롭기도 하구요. 그래서 현재 차량이 필요한 원거리의 현장체험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원감D)

□ 통학차량임대 시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차량이 19인승으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과 같은 단체 활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20명 이상인 4세와 5세 반은 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데요, 19인승을 두 번 나누어 탑승을 할 수 밖에 없어요. 32인승 이상의 차량을 입찰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유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유지비용 상승과 유치원 차량 특성상 좁은 골목을 다녀야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도 생기고 크게는 통학차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이 이유로 볼 수 있어요."(행정실장D)

라) 기타 의견

(1)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관련

□ 계약 양식, 공고문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 필요함

- 현재 계약상의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문을 제작하여 활용
- 운행 관련 매뉴얼이 미비하여 '교육과정 계획안'과 '경기도교육청 안전 매뉴얼' 을 토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통학버스운행일지를 운전자 자가 체크 리스트 방식으로 기록함. 따라서 차량도우미 및 보호 장비 관련 매뉴얼 필요하다는 의견

□ 안전을 위해 버스의 주정차 공간과 유아의 등·하원 공간을 분리해야함.

(2) 통학버스 플랫폼 업체 활용 관련 의견

"플랫폼을 접목시킨 통학버스 운영안에 대해서는 ○○유치원 근방에 또 다른 유치원이 있는데 만약 두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공유하여 이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생길 안전문제의 책임을 어느 유치원에서 질 것이며, 노선 구성이나 유아모집 등의 부분에서 의견 차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원감, 행정실장D)

□ 기존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변동 사항이 필요하며 그로인해 각 교육청 담당자의 업무량 증가와 학부모들의 민원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라는 의견

□ 원 내에서는 차량 업무 부담이 감소되므로 예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의 입장이 공유됨.

2) 강원도 B 공립병설유치원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 운행 시간 및 횟수

- 4학급의 총 64명으로 통학차량은 40인승 한 대로 14~16의 유아가 탑승하며 대략 40~45분 소요

□ 해당 원의 통학차량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비효율적인 통학차량 노선도로 학부모들이 직접 통학에 참여하므로 등교시간에 교문 앞이 복잡하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유아용 67인승 대형차량 운행

"일반적으로 34인승을 에듀버스 차량으로 이용하는데 유아용은 차량내부변경으로 67인승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보통 대우 BS090(차폭이 30센치 더 김), 현대 에어로타운이 주로 이용되는 것 같아요."(운전주무관F)

나) 통학버스 운영 방식

□ 에듀버스 도입

- 통학에도 차량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지만 특히 현장학습 시 별도로 차량 임대를 계약하지 않고 교육청에 신청을 통해 공유 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함.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던 유치원의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 시에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듀버스 도입으로 업무의 간소화가 되었다는 장점이 있음.
  - 등하교 통학 운영 외 에듀버스로서 유, 초, 중, 고의 체험학습 지원에도 활용되는데 월별로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 별 체험학습 일정을 수합하여 차량을 배치함.

"2016년도부터 도입하여 현재는 정착기로 안정화된 시기로 볼 수 있어요.일반적으로 유치원 차량 운영비는 대략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장체험학습시 전세버스 사용료로 대부분 사용되었던 금액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관내는 2시간 기준으로 30만원이고 관외지역은 더 비용이 드는데 에듀버스 도입으로 전세버스 관련 비용 절감의 효과가 커요"(원감D)

□ 버스노선

- 통학버스 노선은 학부모의 유치원 지원 시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서 안내되어야 함.
- 노선 획정은 항상 학부모의 민원이 가장 많은 문제 중 하나임.

"대략적인 노선도는 유치원 자체적으로 구성해요. 처음학교 시스템으로 유치원 지원 시에 학부모는 기본 노선도를 참고하고, 오리엔테이션 날에는 노선도를 바탕으로 근접한 노선도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크게 노선도의 변동은 없지만 노선 내의 범위 안에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원감D)

□ 교육

- 유치원 내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분기별 교육을 실시함.
  - 1분기: 전반적 안전지도 / 2분기: 여름철 안전사고
    3분기: 전반적 안전지도 / 4분기: 겨울철 안전지도

- 동승자의 경우 승하차시 인원 파악, 차량 앞뒤 점검 등의 교육이 이루어짐.
- 운전자는 일일점검표 작성을 의무화 함
  - 일일점검표: 운행전, 운행중, 체험학습, 운행후 점검표에 따라 점검. 안전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라이트 등등의 20여 가지 문항으로 구성

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개선 필요 사항

□ 적정 통학도우미 채용 어려움

- 유치원 직접 채용 시 적정한 역량을 가진 통학도우미 채용이 어려움.
- 운행 시간의 간격이 길고 계약직으로 오전, 오후 근무시간이 한정(3시간) 되어 채용이 어려운 편임. 고연령 승차 도우미가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운전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음.

□ 농산어촌 지역 에듀버스 이용 시 장시간 노선을 이용하게 됨

- 마을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읍면은 유초중고등학생의 버스 이용률이 높은 편. 이로 인해 통학거리가 길기 때문에 운전자와 통학도우미의 초과근무 발생 빈도가 높음.

□ 운전원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

- 강원도 중 춘천의 경우에는 퇴직한 운전주무관이 대체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운전주무관이 직접 연락을 하여 구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 외의 구역은 지역의 특성상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운 편임.

□ 노선 관리

-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반경 내 근거리 거리의 통학버스를 지양하여 근거리임에도 많은 유아가 거주하는 지역의 차량 운행에 한계가 있음.

□ 차량관리

- 지역의 특수성으로 대형버스의 전용 정비소가 한정되어 주기적 점검이 어렵고, 점검이 필요한 날에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음.

3) 강원도 C 공립단설유치원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 운행 시간 및 횟수

- 5학급 109명 중 차량 이용 유아는 60~70명 정도로 두 대의 차량(34인승)이 두 번씩 순환하여 총 4회 운행

나) 통학버스 운영 방식

□ 에듀버스 도입

- 유치원 설립 당시부터 유치원으로 배정을 받은 통학버스를 에듀버스로 도입으로 지자체 내 차량 센터에 차를 보관하고 등하원과 현장 학습 지원 시 출장의 명목으로 운행

□ 노선

- 개원 시 만든 노선을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은 가능하지만 변경은 하지 않는 편임. 노선변경은 운영위원의 심의 필요 사안임.

□ 교육

- 기본적인 차량 안전 매뉴얼, 점검 일지 체크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승차도우미도 매달 매뉴얼을 토대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원장의 경우 필수교육을 받지만 동승자(승차도우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4시간 원격 교육을 통해 연수자료 및 원격연수 이수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님.
- 코스 변경, 방학 중 노선, 대체변경, 신규채용 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운전자 매뉴얼을 차량에 부착하여 매일 일지와 함께 기록함.
-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학도우미가 현장 차량실습의 명목으로 함께 탑승 교육에 참여함. (아이들 승하차, 차량 내 안전 등)

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개선 필요 사항

□ 통학버스 노선에 대한 학부모 민원 대응

- 통학운행 시, 지역의 여건 상 좁은 길은 위험하여 운행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요구 민원이 많은 편으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통학버스에 대해 학부모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위한 적극 안내 필요

□ 공용 에듀버스로 인한 불편함

- 에듀버스 도입 전에는 유치원 자체 소유권이 있던 차량을 에듀버스 도입 이후 현장체험학습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업무 증가

"전에는 우리 유치원 내에서 언제든지 어느 반이든지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싶은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사전에 계획을 알리고 차량 배정을 받아야하니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유치원들은 불편함이 있어요."(원감E)

- 현장체험학습 시 에듀버스 이용 시간 및 거리상 제약이 따름. 현장체험학습 신청 시 원거리는 에듀버스 운행 거리상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체험학습은 이동이 어렵고, 하교시간 운행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의 시간적인 한계점이 발생함.

- 교육청에서 유아 인원에 맞게 차량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여유 있는 탑승이 안됨.

"에듀버스 도입 전에는 34인승 차량이지만 40명의 유아를 34인승 차량 두 대로 넓은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인원에 맞게 딱 40인승 차량을 보내줘서 공간적으로 여유있게 사용하기는 어려워요"(원감E)

- 유아용 안전장비를 별도로 구비 및 장착의 의무가 있지만 성장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규격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짐.

"유아용 벨트의 경우에도 같은 7세 유아들도 아이들마다 키와 체형이 다르거든요. 근데 규정 사이즈에만 추다보니 또래보다 큰 아이의 경우에는 불편함과 위험하기도 하거든요"(원감E)

Ⅳ.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안

1. 유치원 특성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 국·공립 유치원은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규모 차이가 크게 나며 특히 공립초등병설과 단설 유치원 간에도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음.

□ 통학버스 이용 유아의 수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통학버스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됨.

가. 규모별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수요를 가진 잠정적 유아 수에 따라 유치원을 구분함.
- 3명 이하 초소규모, 4~13명 소규모, 14~33명 중규모, 34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으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적절한 차량을 제시함.

1) 초소규모 유치원(유아 3명 이하): 통학택시 활용[4)]

□ 농어촌 지역 특히 도서지역 등 특수 지역 공립초등병설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수요가 3명 이하인 경우 별도 차량 구입이나 장기 임대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음.
- 필요시, 이용 수요가 6명 이하이고, 한 번 탑승 후 20분 이내 유치원 도착·하차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택시 운행을 2회에 걸쳐 시행할 수 있음.
- 사례로, 전라남도교육청의 도서 및 농어촌 지역 통학택시 활용 사업을 들 수 있음.

□ 택시 회사 또는 개인과 탑승 유아들의 차량 이용 노선 및 승하차 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추진함.

□ 택시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탑승이 바람직하나, 택시에 기 장착된 안전벨트를 유아의 신체에 적절하게 착용이 가능할 경우 차량동승자 혹은 운전자의 책임 하에 3명 유아가 모두 정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함.

4) 통학택시는 통학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없음.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도서, 벽촌 등 일부 특수 지역 초소형 유치원에서 통학차량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적 방안으로서 제시함.

□ 택시 탑승 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여 탈 수 있도록 하며, 차량동승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하에 차량에 탑승한 유아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택시에도 동승보호자를 배치하도록 함(권장).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전관리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

□ 유아 3명은 반드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담당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부과되는 성범죄경력조회 등(본 매뉴얼 부록3의 3 참조) 의무사항을 유치원에서 확인하도록 함.

[그림 Ⅳ-1-1] 초소규모(유아 3인 이하) 유치원 통학택시 이용 절차

교육지원청	→	유치원	→	유치원	→	유치원	→	유치원	→	학부모
예산 및 업무협의		통학택시운행계획작성		운영위원회 심의		택시회사와 계약		동승 보호자 채용		노선 안내 통보 받음

2) 소규모 유치원 (유아 4~13명): 승용차 혹은 승합차 이용

□ 차량 이용 수요를 가진 유아가 4명 내지 13명 정도일 때 9인승 승용차 혹은 11인승 승합차를 통학차량으로 채택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함.

□ 11인승 승합차를 임대가 아닌 유치원 혹은 교육청 소유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15인승 전용으로 생산된 통학차량을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좌석 안전띠를 갖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는 별도 보호장구를 갖출 필요 없이 유아 전용 좌석을 이용할 수 있음.

[그림 Ⅳ-1-2] 유아전용 좌석을 장착한 15인승 승합차량의 실내

3) 중규모 유치원(유아 14~33명): 35인승 버스 이용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유아 수가 14명 내지 33명일 때 35인승 미니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 가능하고 해당 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함.

□ 35인승 성인용 좌석 탑재 버스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모든 탑승 유아의 보호장구가 제대로 장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유아용 좌석 또는 유아의 신체에 적절한 안전벨트를 구비한 차량인 경우 보호장구 장착은 권장 사항임.

□ 농어촌의 농로를 이용하거나 구도심의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35인승 초과의 대형 차량을 통학버스로 정하기보다는 35인승을 다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이나 탑승유아의 차량 접근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큰 차량이어서 작은 도로로 들어오지 못하면 큰 도로까지 유아가 차를 타러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차량의 이동 동선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하고 노선을 정해 운행회수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4) 대규모 유치원(유아 34명 이상): 45인승 버스 이용

□ 34명 이상의 유아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5인승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확정하고 신고할 수 있음.

□ 45인승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할 시 유아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용 보호장구를 별도로 탈·장착할 필요 없이 차량에 부속된 안전띠를 정확히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45인승 버스를 유아용 좌석으로 개조하여 67인승 등으로 확대 이용할 수 있음.

나. 지역 맞춤형 통학버스 운행 모델

1) 농어촌 지역: “교육청 직영 통학버스 허브 운영”

□ 농어촌 지역 등에서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이 많아 단일 유치원만으로 차량 구입이나 운행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일부 권역을 획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 노선을 공동계획하여 2~3개 유치원 유아들의 등하원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임.

□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 대기장소가 있는 공용 어린이통학버스 차고(허브, 센터)를 마련하고 이곳을 기점으로 차량을 운행함.

- 교육청에 해당 차고 및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영버스 또는 임대버스를 활용하여 유치원별 운행 동선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노선을 발굴함.
- 통학 시간이 아닌 시간 동안은 통학차량을 유치원의 현장학습 지원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매월 현장학습 계획과 차량 신청 일정을 미리 접수하여 시간에 적절하게 운용함.
- 사례로 강원도 교육청의 '에듀버스' 사업이 있음.

[그림 Ⅳ-1-3] 강원도 교육청의 에듀버스 사례

교육청 직영 어린이통학버스(에듀버스) 운영 현황

1. 추진 목적
 ○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학차량을 지역별 센터 또는 권역별로 통합 관리
 ○ 관리·운영 일원화로 통학차량 미 보유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형평성 제고
 ○ 통학지원 이외의 시간에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 차량 지원

2. 지원 대상
 1) 최초 배정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 우선 지원(통폐합지역·유치원)
 2) 가능한 지역 내 초등학생 지원
 3) 가능한 지역 내 중학교·고등학생 지원

3. 운영 형태
 ○ 교육지원청 통합(센터) 운영 : 운전원은 교육청 소속으로 차고지를 별도 설치·운영
 ○ 권역별(읍·면 등) 운영 : 운전원은 학교 소속으로 권역별 노선 설계
  ※ 현장체험활동 지원 : 교육청에서 일괄 배차
 ○ 운영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차량대수	280	289	289
노선수	420	484	484
교외활동지원횟수	10,247	11,453	운행중

 ○ 교육지원청 통합 **센터(※통학버스 공동 차고지) 운영 현황**

지역교육청	춘천	원주	강릉	영월	철원	양구	계
센터 수	1(5)	1(5)	3(18)*	1(6)	2(16)	1(10)	9(60)

 ( )는 차량 대수
 *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포함.

출처: 강원도 교육청 내부자료(2019)

□ 에듀버스는 강원도의 농촌·산촌 지역 유치원으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의 차량이 2군데 이상 병설유치원에 등·하원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 버스는 유치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초등학생의 통학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학생까지 태울 수 있게 함.

- 강원도 에듀버스 사업에서는 통학차량을 현장학습에 이용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미리 (1개월 전) 계획을 알리고 사용을 신청하면 일정·시간 조정 등을 통해 유치원별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즉 통합뿐 아니라 근거리 현장학습용 차량으로도 공동 활용하고 있음.

2) 대도시 지역: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차량 운행[5)]

□ 차량 대여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차량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업체와 계약하고 이용 가능한 유치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활용성을 높임.

□ 차량 대여 및 운행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공립유치원 차량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 현재 차량 플랫폼 업체는 수도권에만 몇몇 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확대 상황을 보며 전국 이용이 가능함.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플랫폼 업체와 계약하고 이용 가능한 유치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활용성을 높임.

□ 교육청이 직영하는 대신 업체와 계약을 하고 차량운행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임.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의 지원 체계

가. 교육청

□ 각 시·도별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협의체' 구성

- 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청-지원청-유치원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함.
- 신규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업무상 상담과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함.

5) 현 시점(2020. 2)에서 플랫폼 업체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치원의 사례는 찾을 수 없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버스 플랫폼 업체의 유용성과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고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대안적 방안으로 활용 가능이 있어 여기에 수록함.

나. 교육지원청

□ 유치원 실태 파악 및 수요조사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소규모 유치원 공동 통학버스 운행 방안 마련

□ 통학버스 운행 허브 설립 방안 마련

다. 유치원

□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청 절차 명료화 및 학부모 안내

□ 유치원 유아 모집 공고 전 통학버스 운행 계획 및 노선 확정 필요

- 자체 통학버스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행 계획 심의
- 노선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사 점검 필요

□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업무자(운전자, 동승자) 신원 확인 및 안전 교육 철저 진행

V.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충을 위한 제언

□ 본 장에서는 사례분석과 담당자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현황 및 확충 관련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현황 분석의 주요 결과

□ 유치원 통학차량은 대부분 임차로 운영하고 있음.

- 입찰을 통해 운영자 선정, 유치원별 계약.
-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시·도별로 일부 공립에서 수익자부담 실시(경기): 월 5,000원 정도

□ 시·도에 따라 단설 우선(경기) 또는 병설 우선(광주) 지원 선택 상이

- 단설 우선: 장거리 유아 불편해소 목적
- 병설 우선: 유치원 유아 유치를 위한 장점으로 활용 목적

□ 교육(지원)청은 원가책정, 차량안전장비점검 업무 등 담당, 계약 등 그 외 모든 업무는 개별 유치원에서 담당, 업무 과중 호소

□ 초등과 통학버스 공동운영 현황

-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함. 도서벽지의 경우 택시로 운영(전남)
- 초등학생과 차량 안전장구 등 차이가 있어 공동 이용을 하지 않는 사례(경기)

□ 학교 통폐합 등으로 유치원 통학이 어려운 지역 유아를 위해 교육청이 관리하는 통합적 통학버스 운영 사례: 에듀버스(강원)

□ 통학차량 수요조사 시 유치원 호응은 낮은 편, 부모는 제도 선호

- 교육청이 보호장비 구입, 예산 책정을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 없음(광주)
- 공립은 버스가 없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교육청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통학버스 운행은 전무하며 계획수립도 요원(서울)

- 업무 부담 증가, 안전에 대한 염려 등으로 공립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 도입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2. 개선 필요 사항

가. 유치원 교원의 업무 부담 개선

□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도입에 대한 소극적 입장

- 유치원에서는 업무의 증가와 안전문제 발생 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등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 이는 전국 대부분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동일한 응답을 함.

□ 소규모 유치원일 경우 특히 담임교사 업무 부담 과다 예상

나.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확보

□ 주차공간의 안전성 확보 필요

- 병설유치원의 경우 버스 하차 후 유치원 교실까지 거리가 있고 차량 주차공간이 보행자 공간과 구분되지 않음이 다수.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 필요

□ 유아의 등하원 출입구와 차량 승하차 공간 분리 필요

□ 대도시의 경우 유치원이 차량 진입 불가능 지역 위치가 다수임.

다. 운전자 및 동승자 인력 확보

□ 통학차량 확대를 통한 운전자 등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확보 부족

- 인건비 총액 방식인 교육청 예산에서 운전직 증가가 과도하면 다른 직군 수를 감소 시켜 비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 확대는 어려움.

□ 차량 업무 관련 대체 인력 부재

- 운전자 및 동승자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 근무 여건 열악
- 교육청 단위에서 대책 마련 필요

□ 차량 동승자 인력 확보 어려움

- 차량 동승자의 경우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로, 오전과 오후 탑승으로 인한 시간 활용 곤란으로 동승자 채용이 어려움. 또한 방과후 반 하원 차량을 위한 별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 계약직인 차량 동승자의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 각 3시간으로 채용되어 적절한 인력 고용이 어려움.

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노선 선정 및 버스 규모 기준 확보

□ 차량 노선 획정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 과다

- 유치원은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이 없어 차량 운영에 대한 수요 범위가 넓음. 노선 선정이 어려운 난제임.
- 유치원 현장에서는 노선과 관련한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많아 업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대형보다는 중·소형 버스 다회 운행 선택 → 운행 횟수, 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

- 건물에 대한 차량 접근성, 지역 골목길 운행 등으로 대형 차량 운행 어려움으로 유치원의 경우 대형버스 이용 곤란. 결과적으로 소형 다회 운행하는 불편

마. 통학버스 운전 인력 활용 방안 필요

□ 버스기사의 근무시간 활용방안 연구 필요

- 등·하원 시간만 차량 운행으로 짧은 근무시간과 긴 대기 시간으로 근무형태가 비효율적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바. 통학버스 확충 추진 등 관련 지침 마련

□ 통학버스 확충 추진에 대한 지침 부재 및 예산 확보 방안

3. 확충을 위한 제언

가. 단계적 통학버스 도입을 위한 우선 도입 유치원 선정

□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예외 없이 통학버스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운영의 면에서 가능하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통학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유치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학버스 도입 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 있음.

□ 통학차량 도입 우선 유치원 선정을 위한 조건의 예로 첫째, 등·하원 거리가 먼 유아의 비율이 높은 유치원, 둘째, 안전의 측면에서 유아 승·하차와 차량 주차 공간, 차량진입도로가 확보된 유치원을 들 수 있음.

1) 등·하원 거리가 긴 유아 비율이 높은 유치원 우선

□ 통학버스 도입 우선 유치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공립유치원의 대략적 통학권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거리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됨.

- 영국의 사례를 보면 3.2㎞ 거리 이내 거주하는 8세 미만 아동(8세 이상은 4㎞ 이내)의 경우 도보로 다닐 것이 규정되어 있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음. 이러한 명시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유아의 경우 3~5세이므로 영국 규정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 **1.5~2㎞ 이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이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도보거리 지역 이내에 거주지가 있는 비율을 확인하고 비율이 낮은 지역의 유치원부터 도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볼 때,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등으로 유치원과 거주지 거리가 멀어진 곳 등이 가장 **우선 대상**이 될 것임.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구도심의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의 경우는 후순위가 되거나 전체 도보지역에 포함되어 차량도입 불필요 지역이 될 수 있음.
- 유치원 통학 거리에 따른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1) 통학버스 우선 도입 유치원-2) 통학버스 순차적 도입 유치원-3) 통학버스 불필요 유치원"으로 구분이 필요함.**

2) 차량 운행 안전이 확보된 유치원 우선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안전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들을 보면, 유치원 내 안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유아가 승·하차 하는 장소가 도보로 통학을 하는 유아나 초등학생으로 혼잡한 곳이어서 장소에 따른 위험성을 크게 보고 있음. 또한 대도시의 경우 유치원이 좁은 도로를 면하고 있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등 차량 진입이 힘든 곳이 다수임을 지적함.

□ 통학 거리 측면에서 우선 차량 도입 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할 지라도 주차장 시설과 승하차 공간의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를 갖지 못한 유치원은 그러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함.

□ 차량진입이 어려운 유치원의 경우는 현 상황으로는 도입 불가로 분류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변경한 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차량 통합 운영

□ 본 연구를 통해, 차량 도입에 대해 유치원 교원 업무 부담 증가, 안전성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유치원이 통학차량 도입을 꺼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개별 공립유치원이 아니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통합적으로 차량을 운영, 관리할 것을 제안함.

□ 본 보고서의 강원도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지원청(교육청 포함)은 차량과 운전자 등 인력이 대기하는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의 차고지, 기점으로 사용함.**

□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을 하는 경우, 모든 차량은 교육(지원)청이 구입 또는 임대 계약하고 교육청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함.

- 유치원별로 소위 지입차량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상황상 하루에 여러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을 순차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지입차량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어려움. 급한 운행으로 인한 지입차량사고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동아일보 2019. 10. 25).

□ 차량은 2개 이상의 유치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거주지와 유치원 위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동선을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면밀히 계획하고 이에 따라 차량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를 위해 매년 일정 시기에 교육(지원)청 담당자, 차량 운전자, 유치원 관계자 등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함.

□ 이러한 방식은 개별 유치원에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안전 책임이 교육청에 있음.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의 업무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다. 차량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차량 공유

□ 차량과 운전자가 등원과 하원 업무에만 활용되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 사례에서 본 강원도의 '에듀버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 차량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차량과 운전자의 움직임과 대기시간을 모두 정보화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러므로 등원과 하원 간 사이 시간을 활용하여 유치원의 현장학습에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여 활용함.

□ 차량의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무렵 각 유치원별로 차량이 필요한 현장학습 계획을 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운영 담당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일정과 동선을 협의하여 유치원에 차량과 운전자를 배치하도록 함. 이 때 유치원에서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현장학습 차량 배치라는 또 하나의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이 강원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음.

라. 유치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통학차량 활용

□ 유치원 규모에 따라 통학차량을 택시나 소형 차량, 혹은 대형 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 Ⅳ장 내용 참조).

□ 지역 환경을 고려하고 차량 이용 수요를 가진 유아 수를 감안하여 최적의 통학차량을 규모에 맞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치원별로, 교육지원청별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4. 기타 제안

가. 미국식 스쿨버스의 도입: 유아의 안전벨트 착용 문제

□ 본 보고서 Ⅱ장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통학버스는 어떤 차량보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예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좌석을 촘촘하게 배치한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적용하고 충격흡수장치를 좌석 뒤에 장착하여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차량을 타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사고 등 비상시 자율적 안전벨트 탈·장착이 힘든 영유아의 경우를 고려하여 동승교사의 책임 하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유아에게 있어 안전벨트의 탈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전을 최대화한 어린이 통학차량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강화

□ 운전자에 대해 영유아의 행동 특성 이해, 운전 습관으로 인한 위험성 등 교육내용 강화와 이해 수준에 대한 확인의 필요

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관련 기관 간 통합적 통학버스 운영 방안 마련

□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별로 시스템을 통해 통합된 방식의 통학버스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교육부(미발간).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유아배치계획. 내부자료.

박창현, 김근진(2018) - 국·공립유치워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Home to school travel and transport guidance: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London: England.

Ministry for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2010). *A Guide to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 Casualty risk,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quirements, and ten ways to reduce risk on the school journey.* The Scottish government.

國土交通省(2014). 幼兒全用車の 車輛 安全性 向上を のための ガイドライン. 車両安全対策検討会.

[신문기사]

동아일보(2019. 10. 25). 고교 통학버스·SUV 충돌…학생 9명 다쳐 병원 이송.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5/98066110/2

조선일보(2019. 3. 7) 박용진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종일반에 문제...학부모들 불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19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2019. 10. 11). 서울 국·공립유치원 232곳, 통학버스는 1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025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웹사이트]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ww.nhtsa.gov/road-safety/school-bus-safety (검색일: 2019년 10월 1일)

부 록

부록 1.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의견조사 질문지
부록 2.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부록 1.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의견조사 질문지

1. _____ 시/도 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현황

단위: 개원, 대, 명

구분	전체 유치원 수	2019. 7 현재 차량 현황									차량 공동 이용 유치원 수*	비고
		버스 운영 유치원 수	전체 통학차량 수							이용 유아 수		
			15인 이하 소형		35인 이하 중형		36인 이상 대형		소계			
			직영	임대	직영	임대	직영	임대				
단설												
병설												
계												

* 유치원이 통학차량을 초등학교와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현황에 포함을 시키고 해당 유치원 사례 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공립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확충 추진 성과 및 전략, 장애물

□ 통학버스 확충 추진 성과 및 전략 방안(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전략, 노력)

-
-
-
-

□ 통학버스 확충의 장애물(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
-
-

3.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이 제작된다면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
-
-
-

부록 2.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6)]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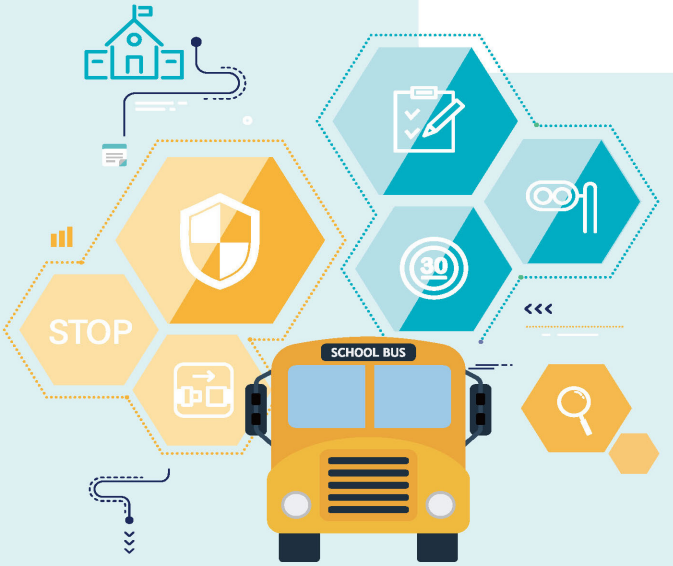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 본 매뉴얼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0월까지의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내용 수정을 하고 2020년 11월 재발간하였기에 기존 2월 판이 아닌, 2020년 11월 판 매뉴얼 전체를 그대로 본 보고서에 대체, 수록함.

목차

Ⅰ.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매뉴얼 개요 69

1. 매뉴얼 발간의 목적 ····· 71
2. 매뉴얼 발간의 배경 ····· 71
3. 매뉴얼의 구성 ····· 72

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73

1. 어린이통학버스란? ····· 75
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 75
3.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조건 ····· 75
4.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구조 ····· 76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의무 ····· 79

Ⅲ.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83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의무 ····· 85
2.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 87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관리 ····· 87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전 요령 ····· 90

Ⅳ.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 93

1. 운전자 안전 수칙 ····· 95
2. 동승보호자 안전 수칙 ····· 97
3. 운영자 안전 수칙 ····· 99
4. 탑승자 안전 수칙 ····· 100

Ⅴ.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103

1. 운영 시행 절차 ····· 105
2. 운행 계획 수립 시 유의점 ····· 106
3. 노선 선정 시 유의점 ····· 107
4. 어린이통학버스 계약 업무 처리 절차 ····· 107

Ⅵ.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및 지원 체계 111
1. 유치원 규모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안 ····· 113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지원 체계 ····· 116

Ⅶ.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Q&A 119

▸ **부록 125**
부록 1. 입찰 관련 서류 (예시) ····· 127
1.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예시 ····· 127
2. 통학버스 운행 계약 특수조건 예시 ····· 135
3. 통학버스 과업내용서 예시 ····· 142
4. 운전원 및 안전요원 신원조회 요청 기안 예시 ····· 148
부록 2.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149
1. 어린이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149
2. 어린이통학버스 ____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150
부록 3. 각종 양식 ····· 151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 151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 ····· 152
3.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 153
부록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 조항 ····· 165
□ 도로교통법 ····· 167
□ 도로교통법 시행령 ····· 17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17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17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18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89
□ 교통안전법 ····· 191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3
부록 5.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194
□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 194
□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주요 내용 ····· 195

I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매뉴얼 개요

01 매뉴얼 발간의 목적

02 매뉴얼 발간의 배경

03 매뉴얼의 구성

Ⅰ.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매뉴얼 개요

1. 매뉴얼 발간의 목적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자료 제공

□ 규모를 고려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의 맞춤형 모델 제안

□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활성화 및 업무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 및 유치원에 제공

2. 매뉴얼 발간의 배경

□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개정「도로교통법」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경험이 없고 전문 행정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위해 통학버스 도입 관련 업무 전개 절차와 관련 정보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와 업무 진행 절차 및 유치원 규모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고자 함.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및 안전관리, 안전수칙 등은 유치원 설립유형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음.

3. 매뉴얼의 구성

□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매뉴얼은 발간 관련 배경을 제시한 Ⅰ장을 제외하면 총 6개의 내용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Ⅱ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와 차량 기준, 차량조건 등을 수록하여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함.
- Ⅲ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장으로, 안전 의무, 정보시스템등록, 안전 점검 및 안전운전 요령을 수록함.
- Ⅳ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 및 탑승자 등 대상별로 정리하여, 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들을 명시함.
- Ⅴ장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한 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노선을 정하는 것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고 본격 실시하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정리함. 특히 노선선정시의 유의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계획서 작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 계약업무 절차 등을 담아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무엇부터 착수해야 할지를 보여줌.
- Ⅵ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Q&A 형식으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부록을 수록하여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실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양식,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법 조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

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01 어린이통학버스란?

0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03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조건

04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구조

0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의무

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1. 어린이통학버스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임[7].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포함됨.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임) 이상의 자동차여야 함.

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항상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비치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3.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차량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전액 배상을 위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보험가입이 완료된 차량

□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유아교육

---

7) 2020년 4월 30일 소위 ‘태호유찬이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범위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으로 확대됨 (20.5.26. 공포 / 20.11.27. 시행 예정)

법」 상 유치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4.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량 구조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제29조(승강구),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차량 외부 색상 및 표시등

-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2개의 적색 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을 설치해야 함.
- 앞면 표시등은 앞면 유리창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 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해야 함.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 이상이어야 함.
- 도로에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며, 정지할 때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여야 하되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함(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 동시 점멸 금지).

[그림 1] 어린이통학차량 교통 표시등 설치 사례

〈차량 앞면 표시등〉

〈차량 뒷면 표시등〉

〈표 1〉 어린이통학차량 표시등 요건 요약

구분	기 준
색상	적색 표시등(외측) + 황색/호박색 표시등(내측)
개수	앞면 2개, 뒷면 2개
점멸 회수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
발광 면적	120㎠ 이상
설치 방법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과 높이가 같도록 설치 • 앞면 표시등: 앞면창유리 위로 가능한 한 높게 설치 • 뒷면 표시등: 렌즈 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설치
광도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별표 28의 2)에 적합

자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등

□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바탕은 청색, 글씨는 황색으로 하며, 재질은 두께 1㎜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함.

〈앞면 부착용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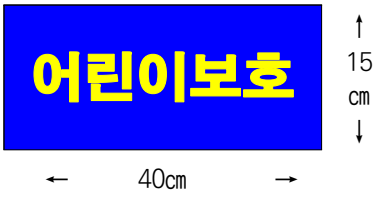

〈뒷면 부착용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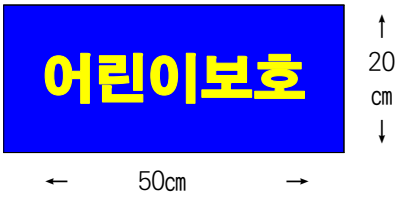

○ 정지표시장치

-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정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되며,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정지표시장치은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 각 모서리의 곡률은 1㎝ 이상.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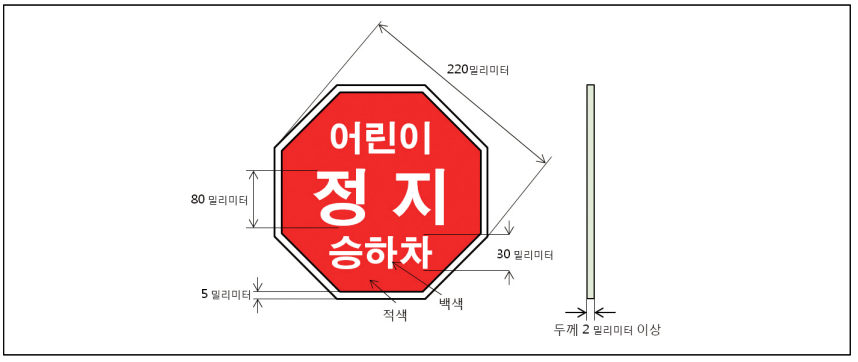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일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 규격의 125% 또는 150%

□ 후방 확인 장치 및 가시광선 투과율

- 광각실외후사경 위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
-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 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그림 2] 후사경과 후방카메라

〈후사경〉

〈후방카메라〉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일 것이 권장됨.8)

※ 어린이통학차량은 선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선팅이 진하면 차량에 유아가 홀로 남겨질 경우 외부에서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옆면 창유리 40% 미만으로 규정함.

□ 안전띠와 승강용 발판

-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cm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cm 이하일 것.(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 사용 가능)

  ※〈발판의 구조〉

  - 승하차 시: 발판이 돌출되도록 함.
  - 자동 돌출 작동 시: 유아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아야 함.
  - 각 단의 발판: 표면이 거칠거나 미끄럽지 않게 마감 처리되어야 함.

[그림 3] 차량 발판 구조

□ 최고속도 제한 장치

- 어린이통학차량은 최고속도가 110㎞/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함.

□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

- 변경된 구조·장치 관련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함
- 제출 서류: 튜닝승인 신청서,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의무

□ 하차확인장치

-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안전장치로서 좌석확인벨(체크벨), 안전벨, 동작감지센서 설치 필요

〈표 2〉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의 유형

안전벨	좌석확인벨(체크벨) -하차확인장치[필수]	동작감지센서
- **안전벨의 개념**: 시동(키) Off 상태에서 자신의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음향장치가 울리고 경광등(또는 차량 비상등)을 깜박이게 하는 장치를 의미함 - **작동**: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는 안전벨은 3세 이상 모든 유아(학생)가 누를 수 있어야 하며 유아(학생)이 스스로 작동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작동되어야 함 - **설치 위치:** 유아 등이 자주 지나가는 통로나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유아(학생) 등의 눈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좌석확인벨 개념**: 시동(키) Off 상태에서 경광등이 깜박이고 운전석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고, 차량 맨 뒷 좌석에 있는 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운전석 경고음이 꺼지는 장치를 의미함 - **작동**: 시동 Off 상태에서 경광등(또는 비상등)이 깜박이고, 운전석에 경고음이 울리며, 차량 맨 뒷 좌석의 좌석확인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경광등의 깜박임이 멈추도록 함 - **설치 위치**: 차량의 맨 뒷 좌석 쪽에 설치하여야 함	- **동작감지센서의 개념**: 시동(키) Off 상태에서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음향장치가 울리고, 경광등(또는 차량 비상등)을 깜박이게 하여 자신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장치를 의미함 - **작동**: 센서에 의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음향장치와 경광등 등에 신호를 전달하여 음향장치가 울리고, 경광등이 깜박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위치**: 동작 감지센서가 차량 내의 어느 곳이든 감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운전자 좌석 제외)

[그림 4]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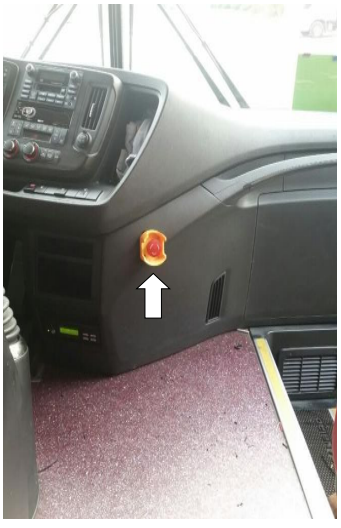

〈안전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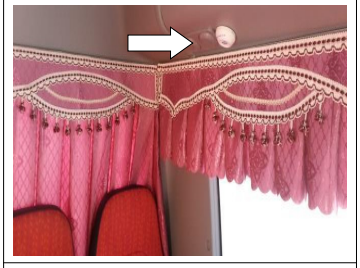

〈좌석확인벨(체크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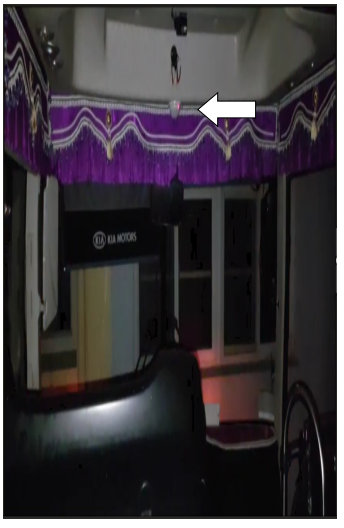

〈동작감지센서〉

주요 위반행위 유형

①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②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③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등 행위
④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 설치 의무[9)]

- 어린이통학버스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 등 안전관리를 위해 DTG 장착 의무화
- 자동차의 속도, 엔진회전수(RPG), 위치(GPS)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 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함.
-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행계통 및 운행 경로 개선, 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표 3〉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규정 법 조문 및 내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1.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2제6항	- 어린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규정	제29조제4항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320센티 이하
	앞뒤 상단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12.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 50조 제3·4항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2.21	후방카메라·후방 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 장치 설치
'19.4.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표 4〉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주요 관계 법령 및 내용

구분		관계법령	법령내용
대상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 유치원(유아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학원(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체육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 인·허가 권자	개별법령	- 유치원(교육감 8조), 초등학교·특수학교(교육감,4조), 어린이집(지자체장,13조), 학원(교육감,6조),체육시설(지자체장, 20조)

9) 2020. 6. 9. 교통안전법 제55조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DTG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021.1.1. 시행 예정임.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가능함.

구분		관계법령	법령내용
통학버스신고	신고가능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1~2항	- 교육시설의 운영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신고요건	도로교통법 제52조3항 시행령 제31조	-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로 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9인승이상의 자동차(제2조 32호), 황색도색·보호표지·정지표시장치(19조), 좌석안전띠(27조), 승강구(29조), 표시등(48조), 광각실외 후 사경(50조), 후방카메라 등(제5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시행규칙 제103조의2 제104조	- △직접(공동소유포함)소유 9인승 이상의 자동차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가능
통학목적 전세버스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가능
안전의무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3조	- 보호자 탑승의무(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보호자동승표지)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 출발·도착시 안전한 승·하차 확인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확인 의무('17.6.3시행)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32조의2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은 운영·운전·동승 전, 정기교육은 매 2년 마다) 이수 -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시설관 주무 기관의 장 - 교육 이수자 교육확인증 발급, 시설·자동차 내 비치
특별보호 등		도로교통법 제51조 제52조4항	- (주변차량)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 (일반차량)유사도색 및 표지 금지
운행기록장치 설치		교통안전법 제55조1항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III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0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의무

02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0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관리

0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전 요령

Ⅲ.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의무

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유아를 태울 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성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해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이 때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안됨.

□ 동승한 보호자는 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 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유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8호)[10)]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나. 안전운행 기록 의무[11)]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

10) 2020년 5월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2020. 11. 27 시행 예정).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동법 제 154조3의4호로 변경예정임.

11) 2020년 5월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안전운행 기록 의무가 추가됨. (2020. 11. 27 시행 예정)

다. 안전교육 이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12]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라. 신고증명서 차량 내부 비치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차량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함(「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 -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과태료 30만원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운영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경우

: 신고필증을 분실했거나 낡아서 못쓰게 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내 서류 및 물품 비치 사항

비치 서류	주요 비치 물품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 어린이통학버스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부록 2의 1]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안전수칙 •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증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 [부록 3의 2] •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 [부록 1의 3] • 승차대상 명단 및 연락처 • 비상연락망	• 응급도구함 • 차량용 소화기 • 비상용망치 • 금연스티커 부착 • 비상용 전등

12) 2020년 5월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의무자에 동승보호자가 포함됨. (2020. 11. 27 시행 예정)

2.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학부모가 직접 통학버스 관련 정보 파악 가능
- 정보시스템 입력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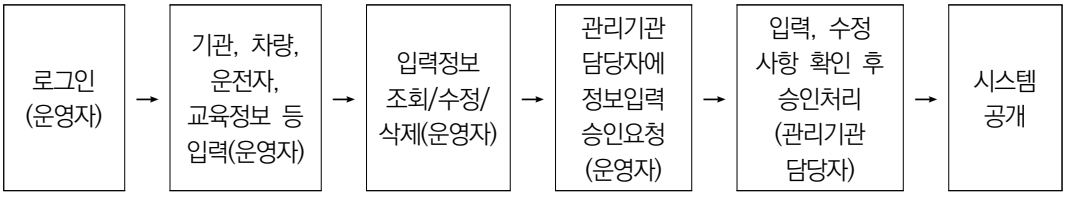

※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수료 여부, 법적안전장치 구비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보험가입 여부,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단,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은 정해진 입력기간에만 입력가능하며 상시입력은 불가능하므로 참고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관리

가. 임대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임차계약 시 계약(특수) 조건 주요 내용

- 운전원 및 동승보호의 의무 및 금지(주의) 사항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약해지 사항
- 차량 정비 상태, 보험가입(사고발생시 무한책임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사고 시 보고사항, 대체차량 조달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사항
- 운전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항(사전이수 확인 사항)
- 등·하교 어린이통학버스 탑승인원 사항
-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안전벨, 동작감지센서, 좌석확인벨) 설치 사항
- 필요 시, 대체 차량 조달 및 대체 운전원 조달 사항(권장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임차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

- 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 소유의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이 아닌 차량 등록 원부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민원24(정부민원포털)를 통해서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해 실제 출고일자를 확인
-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입차량 운행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
- 계약조건으로 예상운행일지(출발지-경유지-목적지, 출발 및 도착 시간 등), 버스 차종, 차량 연식, 승차 정원, 안전에 필요한 계약조건 등을 적시
- 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
- 임차차량 좌석 안전띠의 구조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지 확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조 제6항)
- 임차 시 운행기록장치(DTG)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계약할 것

나.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점검 사항

□ 승차 전

점검 항목	확인사항
타이어	- 타이어 표면과 마모한계선 높이를 비교하여 높이가 비슷하다면 타이어 교체 - 양쪽 타이어의 마모상태 균일 여부를 확인하고 편마모 발생시 타이어 위치 이동 또는 교체 - 운행 전 항상 타이어 공기압 적정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공기압 측정기를 통해 적정 공기압 확인
브레이크	- 엔진룸을 열어 브레이크 오일통을 확인하고 부족 시 오일 보충 -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쉿소리가 나거나, 밀리는 느낌 발생 시 브레이크 패드의 이상 유무 점검
배터리	- 배터리 표면 지시등(인디케이터) 확인 • 녹색: 정상 • 검정색 또는 적색: 배터리액 부족 • 흰색: 수명 초과 - 전조등의 불빛이 어두워지거나 밝기가 수시로 변할 경우 배터리 교체 - 장기간 운행 중지 시, 일주일에 한번은 시동을 걸어 방전 예방 - 배터리 배선과 배선 주변 청결상태 유지
엔진오일	- 엔진오일 게이지를 통해 오일양과 오염도 확인
냉각수	- 냉각수 부족 시 보충탱크를 통해 보충 - 냉각수가 오염되어 탁하거나 색이 변한 경우 교환

□ 승차 후

엔진	- 엔진 특이 현상 발견 시, 즉시 정비소를 통해 점검 • 공회전 RPM이 정상수치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 가속폐달을 밟았다가 놓아도 정상 RPM으로 회복이 오래걸리는 경우 • 공회전 시 잡음이 발생하거나,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다를 경우
와이퍼	- 와이퍼가 닦은 면이 깨끗한지 확인 - 워셔액이 풍부한지 확인 - 워셔액 분사노즐의 각도 등 직동 상태 확인
전기장치	- 각종 전기장치 작동 여부 확인 • 점등장치: 브레이크등, 전조등, 방향지시등, 실내등 외 • 전기장치 미작동 시 퓨즈박스에서 퓨즈를 분리하여 단선 여부를 확인하고 단선 시 퓨즈 교체
변속기	- 변속기오일 색과 양을 확인(정상: 붉은색) -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자동변속기의 N위치에서 D위치 또는 R위치로 변경하였을 때, 변속충격이 약 1.5초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정비소에서 자동변속기 점검
기타	-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 확인

〈표 5〉 차량 관리 일일 점검표(사례)

점검자(운전원) 확인

점검 내용		상 태	비 고
1. 운행 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냉각수 보충상태는 정상인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에 필요한 연료는 충분한가?		
2. 운행 중 점검	엔진 및 차체의 이상음은 없는가?		
	조향장치의 작동상태는?		
	제동장치의 작동 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타어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각종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차량 잠금 상태는?		
4. 기타 기재사항			

※ 범례: ○ 양호 △ 수리필요 × 교환필요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전 요령

□ 스쿨존(School Zone)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의미</td><td>-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td></tr>
<tr><td>안전수칙</td><td>- 시속 30km 이내로 서행운전
- 스쿨존 내 주·정차 삼가기
-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 급제동 및 급출발 하지 않기</td></tr>
<tr><td>범칙금</td><td>-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8시~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
-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아래와 같음.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위반행위</th><th colspan="2">승합자동차기준</th></tr>
<tr><th>보호구역</th><th>일반도로</th></tr>
<tr><td colspan="2">정차(주차)위반</td><td>9만원(10만원)</td><td>5만원(6만원)</td></tr>
<tr><td rowspan="4">속도위반</td><td>60㎞/h 초과</td><td>17만원</td><td>14만원</td></tr>
<tr><td>40㎞/h초과 60㎞/h이하</td><td>14만원</td><td>11만원</td></tr>
<tr><td>20㎞/h초과 40㎞/h이하</td><td>11만원</td><td>8만원</td></tr>
<tr><td>20㎞/h이하</td><td>7만원</td><td>4만원</td></tr>
<tr><td colspan="2">신호·지시 위반</td><td>14만원</td><td>8만원</td></tr>
</table>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2019년 3월/4월 개정에 의함</td></tr>
</table>

□ 빗길, 겨울철, 교차로

구분	안전 운전 요령
빗길에서의 운전	- 속도 줄이기 • 차간 거리는 평소보다 2배 확보 • 빗길 운전은 평소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좁아 주의 - 전조등 켜기 • 빗길운전 시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 차량의 존재를 알리기 - 엔진브레이크 사용하기 • 비가 오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급제동 대신 펌핑 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사용 - 타이어 점검 • 빗길에는 미끄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마모된 타이어를 점검하고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이내로 높이기 • 수막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급가속을 피하기

구분	안전 운전 요령
	- 와이퍼 관리 • 와이퍼의 고무는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 배터리 점검 • 비가 내리면 차량의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므로 배터리 점검에 유념하기 - 침수 지역 또는 예상지역에 주정차 하지 않기
겨울철 운전	- 유리창 점검 • 수증기가 얼어붙거나 눈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리창,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을 점검하기 - 노면 상태 확인 • 도로가 얼어 제동거리가 길어질 위험으로 노면 상태 확인하기 • 1단은 차량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 수동변속기 차량은 구동력이 약한 2단으로 출발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HOLD기능으로 미끄럼 예방하기 -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 • 급발진, 급제동을 피하고 서행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기 - 스노우 체인 및 타이어 사용 - 과조작 금지 •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거나 급차선 변경, 급가속은 피하기 - 주간 전조등 점등 • 눈이 내릴 경우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 방어 운전하기 - 주차 시 고임목을 사용하기 • 기온이 낮은 경우 브레이크가 얼어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보다는 바퀴에 고임목을 활용하기
교차로에서의 운전	- 통행 방법 • 우회전 시에는 우측으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며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기 • 좌회전 시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하기 •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의 신호 차량이 있으면 진행 방해를 하지 않기 • 교차로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후 주행하기 - 교통정리가 없을 시 • 통행우선권의 차량에 양보하기 • 먼저 진입한 차량에 양보하기 • 동시에 진입 시에는 우측도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하기 • 좌회전의 경우에는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 양보하기 - 안전한 통행 • 녹색 신호시에도 안전을 확인 후 주행하기 • 황색신호는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주의하기 • 교차로 진입 전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진입 이후에는 신속히 빠져나가기 • 대형차 뒤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기

Ⅳ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

01 운전자 안전 수칙

02 동승보호자 안전 수칙

03 운영자 안전 수칙

04 탑승자 안전 수칙

Ⅳ.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대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 탑승자)별 필수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전 수칙을 제시함.

1. 운전자 안전 수칙

가. 기본 수칙

□ 어린이는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위를 살핀 후 운전에 임한다.
□ 어린이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운행 시 저속으로 운행한다.
□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승차 시 주의사항

□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인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어린이가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통학버스 승차 시에는 한 줄로 서서 안전하게 타도록 유도한다.
□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탑승대상이 아닌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다. 운행 중 주의사항

□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서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보호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 진입로에서 후진 시 또는 차고지에서 나올 때 걷는 아이나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없는지 주의한다.
□ 스쿨존이 있는 구역에서는 특히 통학하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 스쿨존에서의 4대 안전 수칙
① 30㎞ 이하 서행
②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③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④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모여 있거나 놀고 있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라. 하차 시 주의사항

□ 차를 인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 시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차 문을 연다.
□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게 하고 성인의 도움을 받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린다.
□ 동승보호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핀다.
□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 운행 종료 후에는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제일 뒷자리 바닥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차확인장치를 눌러 작동을 종료한다.
□ 하차 후 출발 전에는 버스 주위를 확인 후 출발한다.

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대처 요령

□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즉시 정차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정차시킨다.

□ 부상자를 확인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19'나 '1339'의 응급 구조요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서 전문 구급요원이나 의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서 비상등 켜고 주간에는 100m 후방,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불꽃신호를 추가한다.

□ 안전삼각대가 없을 때에는 차 뒤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

□ 경찰 공무원에게 신속히 신고한다.

2. 동승보호자 안전 수칙

가. 기본 수칙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멀미약은 부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유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 차량에 탑승한 모든 유아들이 차량 내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승차 시 주의사항

□ 차량이 인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를 차례로 탑승시킨다.

□ 승차 전에 유아들의 옷을 단정하게 해주고 탑승시킨다.

□ 좌석에 앉힌 후 유아가 안전띠를 스스로 맬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유아를 도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모든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한다.

□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동승보호자의 유아 안전띠 매주기 Tip〉

- 좌석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로 의자 깊숙이 앉는다.
-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안전띠 착용 버튼이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단단히 잠근다.
- 한 사람당 한 개의 벨트를 맨다.
-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치도록 맨다.

다. 운행 시 주의사항

□ 유아가 맨 안전띠가 풀리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유아 안전띠가 풀린 경우 동승 보호자가 즉시 다시 착용시킨다.

□ 유아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라. 하차 시 주의사항

□ 차량이 인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안전띠를 풀 수 있도록 안내하며 도움이 필요한 유아는 도와준다.

□ 오토바이, 자전거 등 위험상황이 있는지 살핀 후, 하차한다.

□ 동승보호자가 먼저 하차한 후 유아가 차례로 하차하도록 한다.

□ 유아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하차한 유아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하차한 유아가 인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 출발하기 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뒤 옆에 넘어지거나 횡단하는 유아가 있는지 확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할 때에는 차 안에 남겨진 유아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유아 혼자 어린이통학버스에 있지 않도록 한다.

□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마.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보호자의 대처요령

□ 부상당한 유아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유아를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인도나 도로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경찰공무원이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인원파악을 철저히 한다.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즉시 알린다.

□ 사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반드시 사고 유아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 사고현장이나 후송차량에 유아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동승보호자가 실시하는 유아 안전교육 Tip〉

- 동승보호자는 유아에게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도로나 건널목 등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집에서부터 1km의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등하원길, 놀이터 가는 길 등의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러준다.
- 동승보호자(교사)는 유아에게 좌우를 살핀 후 길을 건너도록 교육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다양한 체험교육을 활용하여 반복하여 지도한다.

  ※ [사례] 수도권 지역 교통안전교육 체험장:

  ① 백석 어린이 교통공원
  - 교육: 실내 시청각 교육(교통안전규칙 강의 및 관련 영상물), 실외 체험 교육(횡단보도 건너기,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교통안전 표지판 이해 등)

  ② KTEC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 교육: 이론 및 동영상 교육(교통사고의 심각성과 특성, 보행 중 교통사고, 교통사고 예방), 교통학교 체험학습(안전벨트체험, 차량구조와 특성, 사각지대의 위험성)

  ③ 한탄강 어린이 교통랜드
  - 교육: 자동차 종류와 생활의 편리성, 교통표지판의 종류 학습, 안전한 보행법, 자동차 안전수칙, 위험상황 인식, 교통사고 신고요령 등

3. 운영자 안전 수칙

가. 기본 수칙

□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임차 시 신뢰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입찰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

□ 버스 운전자의 자격증 유무를 파악하며, 버스 임차 시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절한 안전벨트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학생들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다면 운영자는 차량에 적절한 휠체어 진입 및 고정 장치의 여부를 확인한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정확한 승하차 시간을 부모에게 알려 운전자가 조급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통학버스 운행에 있어서도 안전을 위해 여유 있게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
□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 운영자뿐 아니라 동승보호자나 운전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인다.
□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춘다.

나. 교통사고 발생시 운영자 대처요령

□ 운영자는 사고 소식을 들으면 신속히 상황 파악을 하고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사고 유아가 있으면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상급 기관 등에 상황을 보고한다.

4. 탑승자 안전 수칙

-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안전 관련 내용으로, 안전교육 시 필요한 사항임.

가. 탑승 시 주의사항

□ 버스가 도착하기 5분전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어야 한다. 버스 주변에서 절대 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버스가 정차 지점에서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기다린다.
□ 버스를 기다리는 곳은 뛰거나 노는 곳이 아니므로 안전하게 기다린다.
□ 버스에 탑승할 때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며, 버스의 정지표지가 표시되고 적색불이 깜빡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 버스에 탈 때는 핸드레일을 잡고 타며 앞 사람을 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속하게 제대로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보며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 자리에 앉으면 바로 안전띠를 매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승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차량 운행 중 안전띠를 풀지 않는다.

나. 운행 중 주의사항

☐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창 밖에 내 놓지 않는다.
☐ 버스 내에서 또는 버스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항시 동승보호자 또는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하차 시 주의 사항

☐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
☐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안전띠를 푼다.
☐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크게 두 걸음 떨어져 있다.
☐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앞에 앉은 사람부터 내리며 하차 시 앞에 사람을 밀지 않는다.
☐ 하차 후, 버스 근처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경우 줍지 않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V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01 운영 시행 절차

02 운행 계획 수립 시 유의점

03 노선 선정 시 유의점

04 어린이통학버스 계약 업무 처리 절차

Ⅴ.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1. 운영 시행 절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주소지, 승하차 가능 장소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자체 구성한 '어린이통학버스운영협의회'에서 노선(안)을 확정할 것을 권장함.

- '어린이통학버스운영협의회'는 유치원의 원장, 원감, 행정실장,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또한 필요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노선 확정 과정에서 자체 어린이통학차량운영협의회의 협의와 안전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운행계획서를 마련함.

[그림 5]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행 절차(예시)

1	**이용자 수요 조사**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유아 수 및 지역 조사
2	**기본계획 수립**	- 탑승 예상인원, 탑승 유아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 통학노선 및 정차 위치 확인 - 승하차 시간표 작성
3	**노선표 확정 전 통학노선 현지답사 및 점검**	- 운행구간 및 통학시간의 적절성 - 탑승장소의 안전성 - 노선 및 운행시간 변경 - 도로노면 상태 및 위험 구간 확인 - 운행노선 중 위험물 등
4	**어린이통학버스운영협의회 개최**	- 노선확정, 안전문제, 운행계획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사항 협의 - 원장, 원감, 행정실장, 운영위원회 대표,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
5	**최종 통학차량 이용자 및 노선표 확정**	
6	**'20○○년도 통학차량 운행계획서' 작성**	
7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학부모 부담 경비 발생,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학부모 부담 경비 발생,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함.

2. 운행 계획 수립 시 유의점

가. 노선에 대한 점검

□ 운행구간 및 통학·운행 시간의 적절성

※ 유아 당 편도 최대 탑승 시간은 25분을 넘지 않도록 함(권장사항). (유아 신체 발달에 적정한 차량 탑승 최대 시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20~30분.)

□ 유아 탑승 장소의 안전성

□ 도로노면 상태 및 위험 구간

□ 운행노선 중 위험물 등

나.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정원 준수

□ 탑승정원 초과 운행 금지(도로교통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2조)

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 준수(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확인 및 유의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 설비 시설이 설치 된 곳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설이 설치 된 곳

3. 노선 선정 시 유의점

□ 통학노선 결정 시 현지답사를 거쳐 도로의 안전성 정도에 대한 확인 필요

□ 노선 시간배차를 고려하여 유아의 차량 탑승 시간 기재

□ 승·하차 장소는 유아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정

□ 가급적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동승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 횡단하도록 조치

□ 노선 및 승하차 지점 선정 시 유치원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과 노선 확정 순서를 적절히 선택함.

- 유아수가 많은 단설유치원: 노선 확정 후 유아모집 시 학부모에게 노선 안내. 추후 미세 변경 가능
- 유아수 중규모의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지역 공지 후 유아 모집. 추후 노선 확정
- 소규모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완료 후 노선 확정

4. 어린이통학버스 계약 업무 처리 절차

□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절차를 거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기초금액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게 됨.

□ 산출된 기초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시는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일 시는 입찰과정을 진행하여 계약을 수행함.

[그림 6] 어린이통학버스 용역 계약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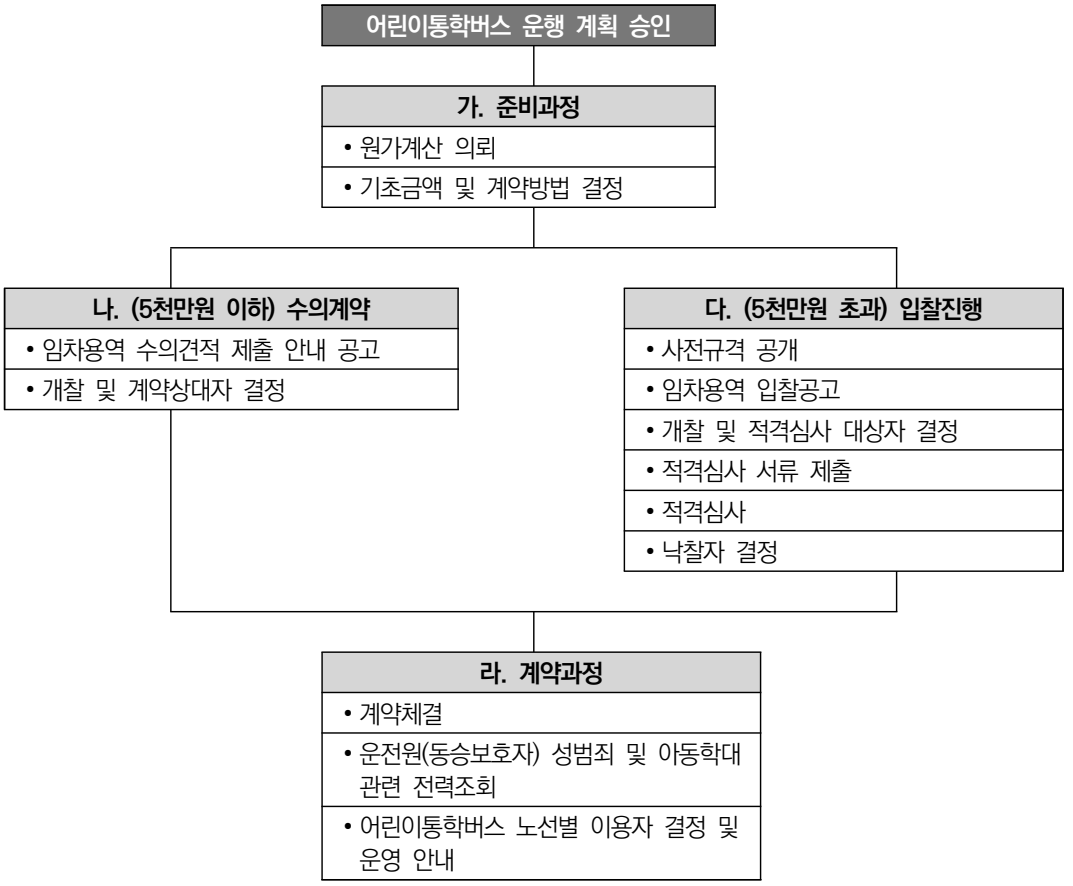

가. 준비과정

□ 원가 계산 의뢰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결정

- 기초금액 산정: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산출
-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원가계산용역 의뢰
- 전문업체가 아닌 견적서를 활용한 기초금액 결정은 학교 자율 결정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결정

- 원가계산보고서 또는 견적서에 의한 기초금액 산출 및 결정
- 기초금액 5000만원 기준 수의계약 혹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법 결정

나. 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절차

□ 임차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근거
- G2B(나라장터) 및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게시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포함

□ 개찰 및 계약대상자 결정
- 입찰/개찰 보고서 확인
- 1순위 계약대상자 결정

□ 계약 체결
- G2B 전자계약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 각 지역별 경찰서(수사과)에 조회 의뢰/확인
- 조회자 명단, 동의선, 사업자등록증 제출
- 추후 운전원(동승보호자) 변동 시 전력조회 추가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노선별 이용자 결정 및 운영 안내
-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등 안내

다. 5000만원 초과 경쟁 입찰 계약 절차

□ 사전 규격 공개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나라장터에 5일간 사전공개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나라장터-입찰정보-사전규격 공개) 포함

□ 임차용역 입찰공고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G2B(나라장터)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 입찰공고문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작성

□ 개찰 및 적격심사 대상자 결정
- 입찰/개찰 보고서 확인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일 이내

□ 적격심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 심사내역: 해당용역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95점 이상 자
- 1순위 계약대상자 결정

라. 계약과정

□ 계약 체결
- G2B 전자계약

□ 운전원(동승보호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 각 지역별 경찰서(수사과)에 조회 의뢰/확인
- 조회자 명단,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 추후 운전원(동승보호자) 변동 시 전력조회 추가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노선별 이용자 결정 및 운영 안내
-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안내

VI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및 지원 체계

01 유치원 규모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안

0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지원 체계

Ⅵ.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및 지원 체계

1. 유치원 규모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제안

□ 국·공립 유치원은 지역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공립 초등병설과 단설 유치원 간에도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의 수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채택하는 차량의 유형을 달리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가. 유치원 규모별 맞춤형 통학버스 운행

□ 소규모 유치원: 승용차 혹은 승합차 이용

- 차량 이용 수요를 가진 유아가 4명 내지 13명 정도일 때 9인승 승용차 혹은 11인승 승합차를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으로 채택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함.
- 11인승 승합차를 임대가 아닌 유치원 소유 혹은 교육청 소유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15인승 전용으로 생산된 통학버스를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되는 벨트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는 별도 보호장구를 갖출 필요 없이 유아 전용 좌석을 이용할 수 있음.

□ 중규모 유치원: 35인승 버스 이용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유아 수가 14명 내지 33명일 때 35인승 미니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 가능하고 해당 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함.
- 35인승 성인용 좌석 탑재 버스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여야 하며 동승보호자는 모든 탑승 유아의 보호장구가 제대로 장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유아용 좌석 또는 유아의 신체에 적절한 안전벨트를 구비한 차량인 경우 보호장구 장착은 권장사항임.
- 농어촌의 농로를 이용하거나 구도심의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35인승 초과의 대형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하기보다는 35인승을 다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이나 탑승유아의 차량 접근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큰 차량이어서 작은 도로로 들어오지 못하면 큰 도로까지 유아가 차를 타러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차량의 이동 동선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하고 노선을 정해 운행회수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대규모 유치원: 45인승 버스 이용

- 34명 이상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45인승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확정하고 신고할 수 있음.
- 유아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가 부착된 45인승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아용 보호장구를 별도로 탈·장착할 필요 없이 기 장착된 안전띠를 정확히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45인승 버스를 유아전용 좌석으로 개조하여 67인승 등으로 확대이용 할 수 있음.

[그림 7] 승차인원 증대가 가능한 유아전용 좌석 장착의 예

□ 유치원 규모별 통학버스 선정 방법

유치원 규모	내 용
소규모 유치원: 4~13명	• 9인승 승용차 혹은 11인승 승합차 이용 – 차량 이용 수요 유아가 4명 내지 13명일 때 가능 – 11인승 승합차를 유치원 혹은 교육청 소유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15인승 전용으로 생산된 통학차량 활용 권장 – 유아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 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는 별도 보호장구를 갖출 필요 없이 유아 전용 좌석을 이용할 수 있음.

유치원 규모	내 용
중규모 유치원: 14~33명	• 35인승 버스 이용 - 차량 이용 수요 유아 수가 14명 내지 33명일 때 가능 - 35인승 성인용 좌석 탑재 버스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여야 함. - 동승보호자는 모든 유아의 보호장구가 제대로 장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유아용 좌석 또는 유아 신체에 적절한 좌석안전띠 구비 차량은 보호장구 장착이 권장사항임. -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35인승 초과의 대형 차량보다는 35인승을 다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이나 탑승유아의 차량 접근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량의 이동 동선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하고 노선을 정해 운행횟수나 방식을 결정함.
대규모 유치원: 34명 이상	• 45인승 버스 이용 - 34명 이상의 유아가 어린이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가능 - 유아 신체구조에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용 보호장구를 별도로 탈·장착할 필요 없이 차량에 부속된 안전띠를 정확히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동승보호자는 모든 유아의 보호장구가 제대로 장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45인승 버스를 유아전용 좌석으로 개조하여 67인승 등으로 확대이용 할 수 있음.

나. 지역 맞춤형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모델 (운영 예시)

□ 교육청 직영 어린이통학버스 허브 운영

- 농어촌 지역 등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아 하나의 유치원만으로 차량 구입이나 운행이 어려운 경우 일부 권역을 획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2~3개 유치원 유아들의 등하원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임.
-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기장소가 있는 공용 어린이통학버스 차고(허브, 센터)를 마련하고 이곳을 기점으로 차량을 운행함.
- 교육청에 해당 차고 및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영버스 또는 임대버스를 활용하여 유치원별 운행 동선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노선을 발굴함.
- 통학 시간이 아닌 시간 동안은 통학차량을 유치원의 현장학습 지원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매월 현장학습 계획과 차량 신청 일정을 미리 접수하여 적절하게 운용함.

[사례] 강원도 '에듀버스' 사업 예시

1. 추진 목적
   -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학차량을 지역별 센터 또는 권역별로 통합 관리
   - 관리·운영 일원화로 통학차량 미 보유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형평성 제고
   - 통학지원 이외의 시간에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 차량 지원

2. 지원 대상
   1) 최초 배정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 우선 지원(통폐합지역·유치원)
   2) 가능한 지역 내 초등학생 지원
   3) 가능한 지역 내 중학교·고등학생 지원

3. 운영 형태
   - 교육지원청 통합(센터) 운영 : 운전원은 교육청 소속으로 차고지를 별도 설치·운영
   - 권역별(읍·면 등) 운영 : 운전원은 학교 소속으로 권역별 노선 설계
     ※ 현장체험활동 지원 : 교육청에서 일괄 배차
   - 운영현황(2018년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차량대수	280	289	289	
노선수	420	484	484	
교외활동지원횟수	10,247	11,453	운행중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지원 체계

가. 교육청

□ 각 시도별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전담조직' 구성

- 교육청-지원청-유치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신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업무상 상담과 컨설팅 진행

나. 교육지원청

□ 유치원 실태 파악 및 유치원에서의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 지역 소규모 유치원 공동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방안 마련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통합 차고(센터, 허브) 설립 방안 마련

- 지역 맞춤형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모델을 도입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통합 대기실 및 기점이 되는 차고를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다. 유치원

□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청 절차 명료화 및 학부모 안내

□ 유치원 유아 모집 시기를 고려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통학버스 운행 계획 수립 및 노선 확정 필요

- 자체 어린이통학버스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행 계획 협의
- 노선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사 점검 필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업무자(운전자, 동승보호자) 신원 확인 및 안전 교육 철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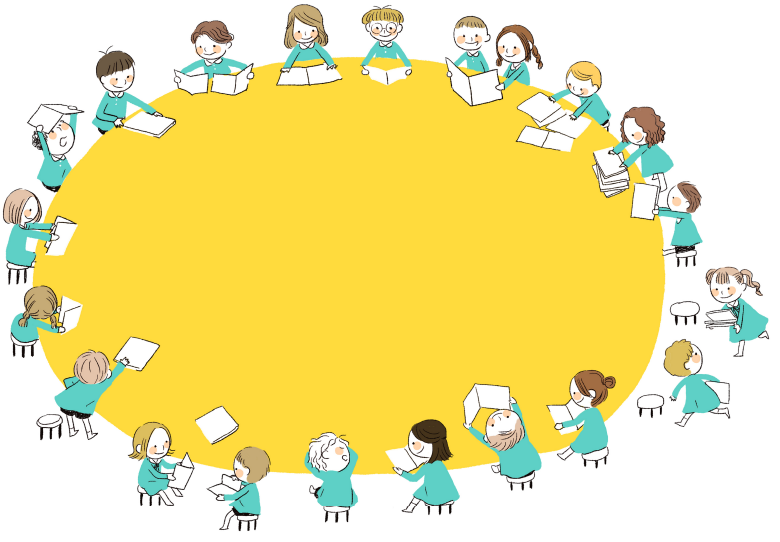

Ⅶ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Q & A

Ⅶ.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Q&A

Q1.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하는 교육시설은 어디인가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13]이며, 미신고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14].

Q2.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차종**: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요건이 변경된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주**: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가목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안전**: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에 정지표시 장치 및 외측에는 적색 표시등, 내측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 표시등을 장착하고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좌석안전띠와 하차확인장치, 운행기록장치를 갖춘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13) 2020년 4월 30일 소위 '태호유찬이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범위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으로 확대 (20.5.26. 공포 / 20.11.27. 시행 예정)

1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7호

Q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승인신청서 1부 표시등 사양서, 도면, 성적서 승강구 사양서, 도면, 성적서 후사경 도면, 사양서 정지표시판 도면, 사양서 어린이 표지판 도면 등
↓	
2단계: 구조·장치 변경 작업(자동차정비업자)	1급 종합정비사
↓	
3단계: 구조변경 검사(교통안전공단)	작업완료 증명서 제출 및 차량 수령
↓	
4단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경찰서 비치)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유치원 인가서 사본 차량 정면, 후면, 측면 사진 각 1부.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Q4.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장치나 구조를 갖춰야 하나요?

- 황색으로 도색
- 앞·뒤에 어린이황색으로 '어린이보호' 표지 탈·부착
-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 접이식좌석은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가능하여야 함.
- 승강구 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 20cm 이하(보조발판 사용 가능)
- 후방카메라 또는 경보음 발생장치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

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 설치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 하차확인장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Q5.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는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웠을 때 운영자가 지명한 성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제8호[15])

  ※「도로교통법」 개정(2020. 5. 26)에 따라 동승의무 위반 벌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Q6. 안전교육은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earoad.or.kr)에서 접수
- **교육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 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간**: 3시간 이상

Q7. 유아용 보호장구는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하나요?

- 안전인증 검사: 안전인증(KC)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반드시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야 함.
- 안전인증 검사 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

15) 「도로교통법」 제156조제8호는 2020년 5월 26일 법률 개정에 따라 동법 제154조로 변경됨.

- 유의사항
  - 영유아가 앉는 좌석 안전벨트 구조는 영유아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가능해야 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보호장구를 착용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함.
  - 몸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킴.
  - 보호장구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경우, 온도를 확인하고 착용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부과 대상임

  ※ 현재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 가능한 18kg 초과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진행 중임(산업통상자원부).

Q8. 교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정기적인 야외활동 등에만 사용하고 통학 용도로는 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도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9.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연식 제한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에 [별표2]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외의 사업용 승합차으로서 차량연식은 9년이나,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자체 차량운영 규정에 따라 차령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 록

01 입찰 관련 서류(예시)

1.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예시
2. 통학버스 운행 계약 특수조건 예시
3. 통학버스 과업내용서 예시
4. 운전원 및 안전요원 신원조회 요청 기안 예시

02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 어린이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2. 어린이통학버스 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03 각종 양식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
3.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0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5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주요 내용

부록 1. 입찰 관련 서류 (예시)[16)]

1.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예시

0000유치원 공고 제 0000-0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호

00학년도 ○○○○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1. 입찰해당사항

가. 건 명 : 0000학년도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내용 : ○○○○유치원 등·하교 수송
- **용역차량 : 대형버스 45인승 0대**
- **0000년 0월 0일 이후 등록차량(최초등록일 기준)**

[공고문 작성 시 유의사항 #1]
※ 사업용 승합차동차의 운행연한(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서 **9년으로 규정**됨.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2년 미만까지 연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0000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다. 용역기간 : 0000.00.00. ~ 0000.00.00.
- 운행일수 : 계약기간 내 유아 등교일(000일 예정)
- 운행노선과 운행횟수(1일 평균 2회 운행)는 조정가능.

라. 특수조건 : [붙임] 참조

16) 부록 1에 수록된 예시 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이므로 시도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하여 활용가능함.

2. 기초금액 : 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0,000원×000명(예상 유아수)×000일(운행 예상일수)

※ 유아수 및 운행일수는 유치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유아 1일 1인(왕복) 단가를 적용함

▶ 입찰서 제출기간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 개찰일시 : 0000.00.00. 00:00 [본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광주광역시),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대상, **공동도급 불허(허용), 지사투찰 불허(허용)**입니다.

[공고문 작성 시 유의사항 #2]

※ 유치원 사정 등 제반여건에 따라 **지역제한 및 공동도급허용 여부 판단**

○ 공동계약 (「지방계약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공동도급 허용 시 공고문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0000년식 이후 등록된 차량 0대 이상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공동수급불허(허용), 지사투찰 불허(허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0000.00.00. 00:00

나. 장　　소 : ○○○○유치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2015.10.1.)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00.000%**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0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00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에 따라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요망)*

[공고문 작성 시 유의사항 #3]

Ⅰ. 입찰공고문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명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 심사기준 택일)

▶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추정가격에 따라 별표2 중에서 정확히 표기해야 함]

예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추정가격이 ○억 원 미만 ○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예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비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Ⅱ.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이행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확한 기준을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양)을 말하나,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음

예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이행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기준**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등 '미성년 운송'

  ※ 유사용역은 인정되지 않음

  [대학교 통학버스, 직장 출퇴근용 임차용역은 '성인 운송'으로 유사용역임]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예시)

  ⇒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고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규모, 양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평가 할 경우 발주기관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인정

"동등이상 용역"이란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계약목적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이행실적을 뜻하며,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 기준을 적용함

예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이행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 **동등이상 용역 실적 인정기준**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등 '미성년 운송'
- **유사용역 실적 인정기준**
  : 대학교 통학버스, 직장 출퇴근용 임차용역 등 '성인 운송'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 용역과 유사용역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금액" 기준을 적용함

★ 실적인정 범위를 수요기관(유치원 등)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예시) 조정 필요

Ⅲ. "장비 보유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확한 기준을 사전 안내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장비보유상황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없으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또는 '과업내용'에 차량 연식과 차량보유 등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예시1) **입찰참가자격으로 확보**
~~~~20○○식 이후 등록된 차량 ○대 이상을 보유한 자로서, ~
〈적격 심사 시 차량등록증 등 기타 증빙자료 확인〉

예시2) **과업내용으로 확보(입찰공고문에도 입찰자 유의사항으로 사전 안내)**
차량은 20○○식 이후 계약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계 제출 시 차량등록증 등 기타증빙자료 확인〉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함

예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장비보유상황 평가기준**
- 장비보유상황 평가기준
  : 입찰자의 명의로 등록된 20○○년 이후 등록한 ○○인승 승합차(버스) ○대

Ⅳ.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적용 시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 모두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대한 평가는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
~~~~

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2015.10.01.)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7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A4 규격으로 상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적격서류 미 제출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적격서류 미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 통보는 적격심사 후 바로 통보 예정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유치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0000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본 건의 공고문 등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tis.or.kr)의 “행정마당-G2B(나라장터)입찰정보”란에 탑재하며, 또한 본건의 공고문,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 등 입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관한 사항은 0000유치원 행정실(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유치원장

2. 통학버스 운행 계약 특수조건 예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유치원(이하 “원장”)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임차운행”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어린이통학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유아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세차·정비·수리
③ 기타 “원장”이 요청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관련 일체의 업무

제4조 (운행구간·횟수·시간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지의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노선표의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한다.
② 증·감차,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 정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쌍방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원장”은 운행횟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소요 경비를 재산정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어린이통학 노선에 따라 1회 이상 무상으로 시험 운행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조 (운행버스) 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어린이통학 수송버스는 00인승 00대로 지입버스가 아닌 회사직영 버스를 배정(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버스) 운행한다. 다만, 증·감차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버스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제시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버스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버스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④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 앞좌석에 구급약품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버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버스의 보험은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버스여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 제시) 1부를 운행개시 기간 3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신고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버스 내에 안전수칙,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탑승자 명단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라는 표지판 및 “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자) ① 운전자는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 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만 65세 이하)로 하며,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용역버스 운전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행 3일전까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지정 및 동행 탑승) ① “계약상대자”는 유아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지도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제3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보조탑승을 위한 안전요원을 지정·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미 탑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요원 미 탑승시 “원장”은 월 청구 금액에서 미 탑승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여야 하며, 제11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 사실이 없어야하며, 만 65세 이하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에 대한 임금은 0000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아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원장"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탑승일지를 작성하여 유치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의 의무) ① 탑승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은 버스가 멈추면 유아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유아가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탑승하면 좌석안전띠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버스가 멈추면 유아가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유아가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하차 시는 버스가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내릴 때는 좌석안전띠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⑦ 하교 시 어린이통학버스 출발 10분 전에 담당 버스 출입문 앞에서 유아의 탑승을 지도한다.

⑧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유아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으로 좌·우를 살펴 유아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상기 제1항부터 제8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무사항) ① 운전자 및 안전요원은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 및 안전요원은 이용 유아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및 안전요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등교 및 하교시간 20분 전에 버스를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버스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버스운행일 익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별지3】을** 작성하여 유치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운전자는 통원 유아들의 인적 사항이 표시된 노선별 이용자 현황 【별지1】을 버스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통학 유아의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학 유아가 승·하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유치원 측에 인계한다.

⑩ 운전자는 다음 운전원의 금지사항과 사고보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및 규정 속도위반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를 이탈하는 행위
라.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스를 이탈하는 행위
마. 버스 열쇠를 버스에 둔 채 버스를 이탈하는 행위
바.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사.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아. 타인에게 버스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자. 통학 유아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요금징수행위 및 유사징수행위)
차.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 사고 보고 및 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4조 (버스 및 운전자 대체)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버스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종업원의 소요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버스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유아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및 신고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각 1부를 계약체결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버스 교체 시에도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버스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안전교육 이수증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안전요원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 체결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를 미 제출할 경우 운전자와 안전요원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유치원명	운전자			안전요원			버스번호	연식	차종	비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16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제1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버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버스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서제출, 일정 용역비 공제 혹은 운전자 교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버스를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버스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대체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장"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 (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는 어린이통학버스 임차료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를 포함하며,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장"에게 익월 00일까지 운행확인서【별지2】, 세금계산서(운행일수 계산)와 함께 용역료를 청구하며, "원장"은 운행이행 상태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 운행요금은 매 월별로 지급하되 버스 1일 1대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한 회수만큼 지급**한다.(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 포함, **원단위 절사)**

④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원장"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연간 계약 운행일수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요금은 (버스 1일 1대 단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단가 * 추가운행일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지도 등) ① "원장"은 운전자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원장"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버스운행 중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버스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운행한 버스에 적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결격사유 업체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특수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원장"은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원장"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의무이행사항을 접수 한 후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원장”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원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유치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치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원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타)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3. 통학버스 과업내용서 예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과업내용서

1. 주요 내용

가. 용역명 : 0000학년도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임차 용역

나. 용역수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해당기간 중 000일)

※ 유치원 교육과정운영상 운행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운행버스 : 00인승 버스 0대 (버스 1대당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 1명씩, 총 0명 배치)

라. 버스이용 유아 수 : 약 00명으로 추정(전·입학 등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마. 기타 사항 : 아래 내역 참조

2. 0000학년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예정 일수 (000일)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학기중													
토요일													
방학중													
합 계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상 운행 일수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음

3. 0000학년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횟수 및 이용 유아 수 추정

이용시기	운행 횟수	버스 현황		이용 유아 수	승강 위치 지정	비고(예시)
		차종 (인승)	대수			
학기중	등교시 : 0회 하교시 : 0회	00인승	0대	00명	○	등·하교
토요일	등교시 : 0회 하교시 : 0회	00인승	0대	00명	○	토요교육활동, 돌봄교실
방학중	등교시 : 0회 하교시 : 0회	00인승	0대	00명	○	토요교육활동, 돌봄교실

4.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노선표(예시이므로 유치원 사정에 맞게 운영)

구분	운 행 노 선	예정 시간	거리	운행 요일	비고
등·하교 시	1호차 ○○○(1차00:00)→○○@정문(1차00:00)→○○드림(1차00:00)→○○@후문(쪽문)(1차00:00)→○○@정문(1차00:00)→○○공원(1차00:00)→○○○(1차00:00)→○○@정문(1차00:00)→유치원(1차00:00)	00분	00.00Km	월~토	오후 하교 0회운행 (방학중 0회) (토요일 0회)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2호차 ○○○(1차00:00)→○○@정문(1차00:00)→○○드림(1차00:00)→○○@후문(쪽문)(1차00:00)→○○@정문(1차00:00)→○○공원(1차00:00)→○○○(1차00:00)→○○@정문(1차00:00)→유치원(1차00:00)	00분	00.00Km		

5.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간표(예시이므로 유치원 사정에 맞게 운영)

가. 오전-등교 (0회)

1호차(A코스)		
차례	유치원 출발	00:00
1	○○○동산	00:00
2	○○○	00:00
3	○○○	00:00
4	○○○ 집	00:00
5	○○○	00:00
6	○○○	00:00
7	○○○	00:00
8	○○○	00:00
9	○○○	00:00
10	○○○	00:00
11	유치원 도착	00:00

2호차(B코스)		
차례	유치원 출발	00:00
1	○○○길	00:00
2	○○○	00:00
3	○○○역	00:00
4	○○○동	00:00
5	○○○	00:00
6	○○○	00:00
7	○○○	00:00
8	○○○	00:00
9	유치원 도착	00:00

※ 시각은 기상과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예정보다 몇 분 정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오후-하교 (0회)

순	유치원 출발 시각	비고
1차	00:00	* 토요일 하교는 00:00 (0회)
2차	00:00	

6. 용역수행의 세부 내용

가. 용역 제공 버스 조건

1) 영업소의 소재지가 OO시/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용역버스는 자사 소유의 버스(공동 도급 허용 시 : 공동도급 회사 소유의 버스)여야 하며, 냉·난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운행버스는 0000년 00월 00일 이후 등록버스로 운행하여야 한다.
4) 용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버스연식, 버스 보험, 버스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2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1) 용역제공 버스 운전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와 운전원, 안전요원은 반드시 동일 버스와 동일 운전기사, 동일 안전요원으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나 안전요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버스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안전요원 성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이용 유아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유아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를 매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이 끝난 후 등교 수송 시에는 수송 완료 후 30분 이내, 하교 수송 시에는 다음날(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등교일) 등교 수송 완료 후 30분 이내에 유치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로부터 유아수송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유치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안전요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유치원측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나 안전요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8) 버스 탑승시간대에는 교통 및 생활안전, 생활영어, 예절 및 지역 홍보자료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수록된 Tape, CD를 비치하여 협의 후 등·하교 시간에 활용하도록 한다.
9) 버스 전면과 후면에 00유치원 어린이 어린이통학버스 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한다.
10) 어린이통학버스의 등교 시 도착지점과 하교 시 출발지점은 유치원 주변의 복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1) 유치원장의 승인 없는 어린이통학버스 교체, 운전기사 교체 발견 시 유치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시험버스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버스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버스를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버스의 기능상태

1) 어린이통학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버스를 선정하여 운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버스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류대를 포함한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유

치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마. 어린이통학버스의 용역대가

1) 용역비와 안전요원 인건비는 운행일 마지막 날에 운행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바. 버스의 보험가입 현황

1) 어린이통학버스는 사고 시 버스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버스여야 하며, 계약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그 사본을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 증명서 사본을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1)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할 버스는「도로교통법」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버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 후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아.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버스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버스, 운전기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운행버스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행하여 유아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유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버스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치원장은 감독 지시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을'에게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 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의 금지사항

1) 유치원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근무태만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버스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유치원에서 금지하는 행위
4) 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행위

7. 특기사항

기타 운행버스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역서 외 별도 조항은 계약의 일반 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한다.

4. 운전원 및 안전요원 신원조회 요청 기안 예시

기안문 예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대외시행/ 수신자: 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제목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나.「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2. 우리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원장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서구 000		
대상자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북구 000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북구 000		

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방법

☞ 인터넷주소 http://crims.police.go.kr (공지사항, 자료실 매뉴얼 참조)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포털검색) - 시설정보등록(시설) - 본인동의(조회대상자) - 조회신청(시설) - 회보(회신)서 클릭

※ 대표자, 조회대상자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시 범죄경력 유무 즉시 확인 가능

부록 2.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 어린이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차량번호: ☐ 확인자: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출발 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었는가?		
	어린이 보호 표지를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와 뒷명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하고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내 비상연락망이 게시되어 있는가?		
	어린이통합버스 내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는가?		
	어린이통학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이 없는가?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승하차보호기(정지표시장치) 및 승강구(보조발판)가 정상 작동하는가?		
	양쪽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타이어 공기압 적정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했는가?		
운행 중	운행노선 및 시간표, 정류장 별 승·하차 어린이 명단을 소지하고 있는가?		
	운행노선과 도착시간 등이 운전자와 학생이 무리하지 않게 여유 있게 설정되어 승하차 시 혼란이나 학부모 민원은 없는가?		
	어린이통학버스 탐승 학생의 연락처와 비상시 학부모 연락처를 비치하여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가?		
	어린이가 자리에 앉는 동안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운전자가 운행시 저속 주행을 하였는가?		
운행 완료 후	지정된 하차 장소에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있는가?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가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둘러보며 하차안전장치 작동을 종료하였는가?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동승보호자는 차량탑승 유아 중 결석유아를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는가?		
	각종 전기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어린이통학버스 ____월 자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점검자: (서명) ☐ 확인자: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운영자	기본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필증 반납, 차량 계약사항, 보험내용, 교육일 갱신 등이 있을 대마다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조치하고 있는가?	
		신규 차량 구입 및 임차계약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있는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운영자)을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었는가?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수칙(매뉴얼)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실시 횟수 기재)	
		운행 시 반드시 교직원 등 학생을 보호할 동승보호자를 탐승시켜 지도하고 있는가?	
	승·하차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장소가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가?	
		방문자나 운영기관 관계자의 주차 장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장소와 따로 지정되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무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증이 설치되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사고발생 처리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신속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가?	
		학교안전책임관(안전담당교사)을 지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직을 일원화하고 있는가?	
운전자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확인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운전자/동승보호자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수칙(매뉴얼)을 모든 차량의 내부에 비치하고 역할별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일일 안전점검 일지를 수시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보고하는가?	
		모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	
교사		교사는 통학버스 탑승 유아의 출결여부 및 결석사유 증 출결사항을 매일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확인하는가?	

※ 점검결과를 O, X로 표시하고 "X"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후 보관할 것

부록 3. 각종 양식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 업 체 명 : ○○고속관광
◎ 차량번호 :
◎ 운행기간 : 0000.00.00. ~ 0000.00.00.
◎ 운행일수 : 일

구 분	기준일수	운행일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계
등·하교				
계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0000. . .

제출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직인)123

○○ 유치원장 귀하

확인	담당자	행정실장	원장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

00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일지

예시이므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할 것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안전요원 성명(등교)		안전요원 성명(하교)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운행상황		용무	출발 시간		종료 시간	탑승 인원	비고
등·하교	등교	유아수송				명	
	하교(1)	유아수송				명	
	하교(2)	유아수송				명	
특이사항 기록							

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월 일 요일

○○ 유치원장 귀하

3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16. 11. 30., 2018. 3. 21.〉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 본인의 동의서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30.〉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1.〉

④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16. 11. 30., 2018. 3. 21.〉

⑤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16. 11. 30., 2018. 3. 2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2. 3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9. 12. 3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8. 7. 16.〉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ㅇ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table>
<tr><th rowspan="3">대상기관의 종류</th><th rowspan="3">형의 종류</th><th colspan="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th><th colspan="5">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th></tr>
<tr><th colspan="3">성범죄 발생 시점</th><th>형 확정 시점</th><th colspan="3">성범죄 발생 시점</th><th colspan="2">형 확정 시점</th></tr>
<tr><th>2006. 6. 30. ~2008. 2. 3.</th><th>2008. 2. 4. ~2009. 12. 31.</th><th>2010. 1. 1. ~2010. 4. 14.</th><th>2010. 4. 15. 이후</th><th>2012. 8. 2. 이후</th><th>2013. 6. 19. 이후</th><th>2016. 11.30. 이후</th><th>위헌결정 이후*</th><th>2018. 7. 17. 이후</th><th>2018. 9. 14. 이후</th></tr>
<tr><td rowspan="3">① 유치원, 학교,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② 체육시설</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해당 없음</td><td>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해당 없음</td><td>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해당 없음</td><td>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d colspan="6">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2">해당 없음</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2">해당 없음</td><td colspan="6">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2">해당 없음</td><td colspan="6">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⑤ 개인과외교습자</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3">해당 없음</td><td colspan="5">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d rowspan="12">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3">해당 없음</td><td colspan="5">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3">해당 없음</td><td colspan="5">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교사</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4">해당 없음</td><td colspan="4">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4">해당 없음</td><td colspan="4">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4">해당 없음</td><td colspan="4">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5">해당 없음</td><td colspan="3">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5">해당 없음</td><td colspan="3">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5">해당 없음</td><td colspan="3">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⑧ 위탁교육기관</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7">해당 없음</td><td>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7">해당 없음</td><td>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7">해당 없음</td><td>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td></tr>
<tr><td rowspan="3">⑨ 고등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8">해당 없음</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8">해당 없음</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8">해당 없음</td></tr>
<tr><td rowspan="3">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td><td>3년 초과의 징역·금고</td><td colspan="9">해당 없음</td></tr>
<tr><td>3년 이하의 징역·금고</td><td colspan="9">해당 없음</td></tr>
<tr><td>벌금형</td><td colspan="9">해당 없음</td></tr>
</tabl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18. 3.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부록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 조항

〈색인〉

- 경찰청 소관 법령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의 제한)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제37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제18조(과태료)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자동차규칙)

제2조(정의)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제25조의2(접이식좌석)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등)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9조(승강구)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

제4조(면허 등)
제12조(명의 이용 금지 등)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인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

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1. 6. 8.]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인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 1. 28.〉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8.〉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법률 제17311호(2020. 5.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0. 11. 27.]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제154조로 변경예정임.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0. 11. 27.]

◆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보호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보호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27.〉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6. 1. 27.]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 6. 28.]

◆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22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시하면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

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2. 12.〉

◆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0. 9. 10.〉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2018. 4. 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8. 4. 25.]

◆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②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④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안전교육통지서에 따라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에 갈음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본조신설 2011. 12. 9.]

[제목개정 2014. 12. 31.]

◆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①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위반이나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를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 제37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 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17. 11. 14.〉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를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

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⑥ 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14. 2. 21.〉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1.〉

◆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15.〉

◆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 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2. 19.]

◆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0.,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 12. 23.〉

②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 3. 29., 2011.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24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 및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18. 7. 11.〉

⑤ 삭제 〈2008. 1. 14.〉

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제목개정 1997. 1. 17.]

◆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8., 2018. 7. 11.〉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승강구)

①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1. 8. 31., 2014. 6. 10., 2017. 1. 9.〉

1.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2. 삭제 〈2009. 6. 18.〉
3.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 삭제 〈2017. 1. 9.〉

③ 삭제 〈2017. 1. 9.〉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8.〉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 12. 8.〉

③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4. 6. 10., 2018. 7. 11.〉

④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1999. 2. 19., 1999. 6. 28., 2008. 12. 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⑤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10. 3. 29., 2012. 2. 15., 2017. 11. 14.〉

1.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5. 7. 21., 1995. 12. 30., 2003. 2. 25., 2005. 8. 10., 2010. 3. 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④ 삭제 〈2012. 2. 15.〉

◆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2조(명의 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

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 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교통안전법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 6. 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 법 개정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 6. 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시행일 : 2021. 1. 1.] 제55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한다.

부록 5.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20.11.27 시행예정

구 분	준 수 사 항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신설)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 어린이보호표지 ▵ 보험 ▵ 소유관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강화)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제3항) ▸ (신설)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형사처벌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제53조제1항)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제2항) ▸ (신설)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 (강화)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제53조제4항) ▸ (강화)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제53조제5항)	형사처벌 벌점 30점
	▸ 어린이 안전띠 착용(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일반 운전자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제1항) ▸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반대방향 진행 차량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제2항) ▸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제51조제3항)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위반(제52조제4항)	범칙금 3만원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신설)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교육감·지자체장)

□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주요 내용

'20.11.27 시행예정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제53조의5)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함
제3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함
제4조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정보공개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함
제5조	부칙 제2조·제3조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새롭게 포함되는 '체육교습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제6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경우 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제7조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